19세기 조선의 국가, 법, 사회
제27회 월례발표회 자료집

“심희기, 조선후기 촌락공동체 부재론에 대한 비판
(『동북아법연구』 Vol.15 No.2, 2021)” 비평

(이유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일시 : 9월 23일(금) 14:00 ~ 18:00
○장소 : Zoom 회의

목차

공동체 논의의 쟁점과 미래 “심희기, 조선후기 촌락공동체 부재론에 대한 비판(『동북아법연구』 Vol.15 No.2, 2021)” 비평
(이유진, 연세대 법학연구원)·· 1

심희기, 「조선후기 촌락공동체 부재론에 대한 비판」···················· 29

이 자료집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C2A02093536)

19세기 조선의 국가, 법, 사회 연구팀 제27회 월례발표회
2022.09.23.

공동체 논의의 쟁점과 미래

"심희기, 조선후기 촌락공동체 부재론에 대한 비판(『동북아법연구』 Vol.15 No.2, 2021)" 비평

이유진(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1. 들어가며

한국학계에서 역사적인 혹은 현재까지 이어지는 실체로서 소위 '공동체'란 무엇이며 그 성격과 특질이 어떠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 것이 벌써 몇십 년이 되어간다. 법학, 사회학, 경제학, 역사학 등 다양한 전공의 학자들이 해당 분과의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개념을 정의하고 구사하고 있으며, 각 분과 학문 내에서도 학자별로 정의하고 구사하는 개념이 상이한 실정이다. 학자들 간에 전격적으로 개념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가 공전될 우려가 있기는 하나, '공동체'에 관한 연구는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공동체' 개념은 중세 서구 유럽의 지역의 생활단위(혹은 조직)인 '촌락공동체'를 그 모델로 하여 독일, 영국, 미국 등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고, 일본 학계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활용하였다. 한국 학계에서는 대계 조선 중기 이후의 '동계(洞契)'를 분석하여 한국의 '촌락공동체'를 정의하기 위해 어떤 나라의 어떤 학자의 어떤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반 논의가 있었다. 거칠게 정리하면 대개는 자연발생적·지연적인 '공동체'와 인위적으로 목적에 따라 결합하는 '결사체'를 구분하는 독일의 사회학자 퇴니스(Tönnies)의 분류를 근간으로 하며 이 둘을 대치되는 개념으로 활용하는 편이다. 그러면서도 논자마다 '공동체'를 정의하는 세부 요건을 다르게 설정하는 실정이다.

이영훈(2001)은 아마도 그 때까지의 공동체 관련 논의 중 가장 협소한 공동체 개념을 적용하여 한국 전근대에서 공동체의 존재를 찾을 수 없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펼쳤고, 이후 이를 비평하는 여러 논쟁이 뒤따랐다. 20년이 지난 지금, 심희기는 본 논문['조선후기 촌락공동체 부재론에 대한 비판'(2021)]에서 이영훈의 개념 구사를 논박하면서 새로운 공동체 정의의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기왕의 공동체 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이하에서는 심희기의 논문(2021)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그가 구사하는 공동체 개념의 특징을 구체화한 후, 앞으로 한국 학계에서 공동체 관련 논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제언해보고자 한다.

2. 이영훈의 촌락공동체 부재론 비판

본 논문에서 심희기는 이영훈(2001)의 '공동체' 정의를 개념화하고, 다섯 가지로 분류된 공동체의 구성 요건을 각각 논박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영훈의 '공동체' 정의 및 각 항목에 대한 심희기의 개념화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이영훈의 공동체 정의와 심희기의 개념화

요건	이영훈(2001)	심희기(2021)
1	구성원 상호간에 권리·의무의 일정한 차별은 있어도 일방이 타방의 인신을 신분적으로 지배하는 일을 배제될 것	구성원들 사이의 평등성
2	자발적 가입의사와 무관하게 생득적으로 강한 귀속의식을 느끼는 대상일 것	가입·탈퇴의 선택불가능성
3	개별 구성원으로부터 일정하게 분리된 독자의 권위 내지 인격으로 성립할 것	촌락의 독자적인 법인격
4	공동의 재산이 소유된 위에 추구되는 공동의 경제적 이해가 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 재생산에 있어서 긴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	촌락자원의 공동이용
+5	인간의 사회적·경제적 생활에 긴요한 제반 공공업무가 하나의 통합적 공동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복수의 임의적 결사체에 의해 분산적으로 수행되었음(282쪽)	동리가 수행하는 공동업무의 통합성·광범성

이영훈은 경상도 예천군 대저리(大渚里) 동계(洞契)의 사례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증하였다. 대저리 동계는 동리(洞里)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나아가 하민(下民)을 통제할 목적으로 양반 신분의 자격자들이([요건1] 불성립) 자발적 가입의사와 기금참여에 기초하여 성립시킨 연대로서([요건2] 불성립) '결사체'로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평등한 성원들이 강한 귀속 의식을 공유하는 대상으로서 하나의 인격(人格)으로서 승화된 공동체를 발견할 수 없다([요건3 불성립]). 동리는 범위와 중심을 달리하는 다수의 연망과 결사체가 중첩된 관계일 뿐이다[다층이심의 연망]. 이영훈은 식민지 권력이 침투하여 기존의 신분질서를 변질시킨 이후에야 그가 주장하는 공동체의 요건을 가진 촌락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었다고 단언하였다.

이영훈에 따르면 조선시대에는 상대적으로 평등한 구성원이 동리에 생득적으로 종속되지 않았으며, 동리를 단일한 법적 실체(법인격)로 규정할 수 있는 무언가도 존재하지 않았다. 동리는 자연 내지는 지리적 실체에 불과하고, 인간은 그 안에서 다양한 목적을 가진 여러 연망과 결사체로 묶여있을 뿐이었다.

심희기는 위와 같은 이영훈의 주장을 각 요건 별로 다음과 같이 논박하였다.

[요건 1] 구성원들 사이의 평등성

· 중세 유럽이나 근세 일본의 촌락에서 반드시 구성원끼리의 신분적(내지는 계층적) 평등성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Befu 1965; Ooms 1996)
· 신분제는 하층민의 복종·헌신·노동력에 대한 반대급부를 양반이 지급한다는 점에서 상호호혜적인 성격을 가지기도 하므로 일방적인 인신지배로 보기는 어렵다.(정진영, 2015, 2018)
· 거제도 항리는 실제로 여객주인과 어조를 공동소유하며 부세에 공동납으로 대응하는 촌락공동체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정순우·안승준 1998; 전민영 2017; 송양섭 2021)

⇒ **잘못된 기준이므로 철회되어야 함**

[요건 2] 가입·탈퇴의 선택 불가능성

cf. 공동체는 자연발생적, 구성원은 무의식적이고 우연적으로 귀속된다(김필동 2002).
· 조선의 동계는 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거주 여부만으로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경우도 있다(1911.04.22. 해주 구재판소 조회에 대한 05.12. 조선총독부 취조국 장관 회답).
· 영국 중세 촌락에서 주민 모두가 촌락구성원으로 취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Razi 1981).

⇒ **잘못된 기준이므로 철회되어야 함**

[요건 3] 촌락의 독자적인 법인격

· 중세 영국 촌락, 일본 근세 촌락에서는 마을 자체가 주체 내지는 대상이 되는 법적 실체 내지는 단체적 실체로 자리매김하였다(Dyer 2000; Befu 1965).

· 저곡리 동계는 동답(洞畓)을 소유하고, 수입지출을 기록하여 동회(洞會)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는 등 근세적 법인격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 ‘거민등장(居民等狀)’ 혹은 동의 존위(尊位)나 두민(頭民) 등의 명의로, 즉 동의 이름을 걸고 제기하는 소송 사례가 많다.

· 통감부는 동리는 물론 동계(洞契), 서원, 향교 등에도 법인격이 부여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요건4] 촌락자원의 공동이용

· 이영훈 논문에 이와 관련된 논증이 부재하다.

· 중세유럽처럼 토지를 촌락이 소유하여 구성원이 지분을 가지고 공동경작하는 사례는 없다.

+ [요건5] 동리가 수행하는 공동업무의 통합성・광범성

· 대저리 동리는 동제洞祭, 서당, 공동납, 부조扶助, 치안, 공동노동 주관(ex.두레) 등 산림천택의 공동소유·공동이용을 제외한 포괄적인 공동업무를 수행하였다.

심희기에 따르면 이영훈의 공동체 정의는 크게 두 가지 설의 영향을 받았다. 첫째, 그는 ‘주민 모두가 구성원이 되면서 포괄적인 공동업무를 취급하는 촌락’이라는 모델을 의식하고 있다. 이는 일본 ‘무라(村)’가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이며, 동남아시아와 중국을 단체가 없는 네트워크 사회로 규정한 아다치 게이지(足立啓二 1998)의 설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둘째, 인간의 단체를 본질의지에 의해 결합된 사회형태인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 공동체)와 선택의지에 의해 결합된 사회형태인 게젤샤프트(Gesellschaft, 결사체)로 분류하는 퇴니스의 주장을 차용하였다. 다만 공동체와 결사체 이외의 모델을 제시하지 않아 공동체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 인간적 결합이 모두 결사체로 간주되도록 하였다.

심희기의 본 논문에 따르면 1) 주민 모두가 구성원이 되는 촌락은 이상향에 불과할 뿐 실제로 누가 촌락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지는 쉽게 입증하기도 어렵고 공동체의 성격을 논하는 데 중요한 요소도 아니다. 2) 또한 공동체와 결사체의 양자택일적 이분법은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할 뿐이며, 공동체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요건1]과 [요건2]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력한 어조로 비판을 가한 것이다.

3. 심희기의 ‘촌락공동체’ 규정

심희기는 본 논문에서 [요건1] 구성원들 사이의 평등성과 [요건2] 가입·탈퇴의 선택 불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은 반면에 [요건3] 촌락의 독자적인 법인격, [요건4] 촌락자원의 공동이용, [요건5] 동리가 수행하는 공동업무의 통합성・광범성을 인정한다. 또한 다음과 같이 다양한 동계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요건3], [요건4], [요건5]를 충족하고 있는지를 따져본다.

강원도 원주부 요선계·요선동리(1744년 동계 조성, 상하합계 형태로 20세기 초반까지 지속)

는 동리의 공동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회(公會, 계회인 講信과 구분됨)'가 있었으며, 경찰·치안 및 도로 보수·교량 수리 등의 공동업무를 취급하고 있었다([요건5]). 충청도 옥천군의 동리에서는 이장이 동리의 사무를 담당하는데 조세수납, 도로·교량의 수축을 담당하였고([요건5]), 리에 동유산(洞有山)이 있으며([요건4]), 법인격이 있었다([요건3]). 충청도 괴산군의 경우에도 법인격이 있고([요건3]), 리가 전답·금전·산림 등을 소유하며([요건4]), 조세 및 공공사업 등의 사무를 집행하였다([요건5]).

심희기의 촌락공동체 규정에서 특징적인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로 동계가 곧 근세 조선의 촌락공동체라는 것이다. 본문에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이용기(2017)의 논문 중 '마을 단위의 생활공동체적 성격의 동계'라는 표현을 각주에 인용하였다. 나아가 '조선의 촌락민들 중 일부는 동계와 동리를 혼동하여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동계와 동리는 혼융·중첩되어 있는 상태'(347쪽)라고도 지적하였다. 둘째, 공동체 규정 중 [요건1]과 [요건2]를 부정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이 두 가지 요건은 인간의 단체를 공동체와 결사체로 구분하는 여러 학자들이 '공동체'를 정의할 때 매우 중요시되는 요건이기도 하다(김필동 2002). 촌락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요건1]은 '촌락거주민=촌락민'이라는 자격의 (상대적) 평등성이 될 것이고, [요건2]는 태어나자마자 자연스럽게 촌락민이 되면서 외부인을 배척하는 (그렇기에 이주가 비교적 자유롭지 않은) 모델이 될 것이다. 이는 유럽 중세의 마을이나 일본 근세의 무라를 '공동체'의 원형으로 간주하는 주장과 맞닿아있기에 조선의 촌락에 이러한 규정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그의 공동체 개념은 이전에 출간된 저서를 통하여 더 구체화할 수 있었다(심희기 1992). 그는 게마인데(gemeinde)나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를 공동체(community)로 번역하고 게젤샤프트(gesellschaft)를 결사체(association)로 이해하는 그간 논의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u>게노센샤프트(genossenschaft)</u>를 공동체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게마인데나 게마인샤프트는 생산활동을 공동으로 하는 농경공동체로, 생산공동체적(=경제적) 성격이 강조된다. 이에 비하여 게노센샤프트는 독일의 법학자 기르케(Gierke)의 설에 따르면 구성원(Genossen)이 생활상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물적 수단으로 토지를 공동소유하여 생산활동을 하거나 수익을 집단 운영 차원에서 처분·관리한다. 즉, 구성원들의 종교적·문화적·경제적·사회적·법적·정치적 등 다양한 공동목적의 성취를 위한 인적 결합이 곧 공동체(=게노센샤프트)인 것이다(222-223쪽).

이러한 시각에 입각하면, 조선의 계(契)는 계원 상호 간의 긴밀한 인간적 결합을 목적으로 하며 생활의 이익을 공동으로 추구하는 생활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228쪽). 그 중 동계(洞契)는 '동(洞)'이라는 지역 범위를 상정할 수 있는 '촌락공동체'이다(300쪽). 동계는 전답(田畓)을 소유하며, 정자[亭] 등 집회 장소가 정해져 있고, 임야·제방·도로 관리에 힘쓰며, 상구(喪具)나 혼구(婚具) 등의 의례 용품을 소유하여 구성원에게 제공한다. 조선의 동계는 중세 유럽의 촌락공동체처럼 토지를 공유하는 생산공동체적 성격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생활 전반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로서의 성격을 더 많이 드러낸다.(255-257쪽)

'공동목적의 성취를 위한 인적 결합'이라는 '게노센샤프트적 공동체 정의'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심희기는 기존 공동체 논자들이 중시하던 [요건1]과 [요건2]의 중요성을 크게 약화시킨다. 동계는 특정 지역 기반으로 형성되면서도 지역 자체에 결박되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촌락 경계 내에 거주하는 촌락민 전부가 동계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다(231쪽). 동계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구성원의 의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 발생 근거는 부차적 문제에 불과하다. 오히려 집단 내부와 외부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공동체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요소이다(300쪽). 구성원간 긴밀한 인간적

결합이 이루어지며, 전반적인 생활을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여 구성원끼리 상호부조적인 권리 의무관계를 가지는 것이 촌락공동체, 곧 동계의 특징이다(305-307쪽).

정리하자면 심희기는 촌락공동체를 정의하는 데 있어 기존의 공동체 정의에서 중요시했던 생득적 귀속 조건이나 이에서 파생되는 구성원 간의 상대적 평등성보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생활을 공유하는 지역 내 인적 결합'이라는 요소를 중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공동체 관련 논의들과 매우 다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논자에 따라서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강조하는 심희기의 공동체 정의를 결사체에 가까운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 같다.

4. 동계 및 공동체 연구의 논점과 보완점

1) 동계의 성격 정의: 공동체와 결사체

실제로 조선에 공동체가 없었다는 이영훈의 선언적 주장 이후에 여러 논자들은 이영훈이 제시하는 '공동체'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이상적이라고 지적하였다(김필동 2001). 퇴니스의 공동체/결사체 분류법을 수용하면서 '느슨한 공동체/이차적 공동체'(김필동 2002)나 '제도화된 조직체'(이용기 2017)와 같이 공동체와 결사체의 중간적 특징을 가진 무언가를 상정하는 논자도 있다(안승택 2014, 10-11쪽 주2 참고).

이영훈이 주장하는 '다층이심(多層異心)의 연망(緣網)' 개념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동리 내외에서 중심과 범위가 서로 다른 여러 목적계의 연망이 뭉쳐져서 동리가 공동체처럼 보일 뿐이지 '동리'라는 실체는 사실상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에 대해 비판적인 논자들은 실제로 동계가 여러 계들 사이에서 중심이 되어 나머지 목적계와 일정한 관계를 맺는다고 주장하였다. "포도나무에 달린 여러 포도송이"들처럼(안승택 2014), 동계를 중심으로 여러 목적계가 상호 연관되어 네트워크화되었다는 것이다(이용기 2017).

그간 동계에 관한 연구가 계의 정관을 분석하여 계원의 자격, 계의 역할 범위 등을 살펴보았다면, 최근에는 계전(契錢)의 출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등장하고 있다. 김건태(2019)는 전라도 장흥 모산리 동계 자료의 금전 출납 현황을 분석하였다. 모산리에서는 금전 출납부를 남긴 조직 중 '계(契-동계, 망결계, 금고계)'와 '전(錢-수사전)'을 분리해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차이를 계답의 지대, 계전의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확대하는지 여부로 구분하였다(39쪽). 또한 옆 동네인 계산리 주민 6인이 모산리의 동계(5인) 및 여러 목적계에 참여했던 사실을 확인하였다(49쪽). 동계의 가입과 탈퇴 여부가 해당 동 거주 여부가 아닌 개인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으로, '계'는 '의지에 따른 관계 맺기'의 결과였다. 최근의 두레 연구(김건태 2021)에서도 그는 동중=동회는 동의 유력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모임으로 정의하였다(383쪽). 정리하자면 김건태는 동계가 식리된 기금으로 운영되며, 거주민 모두가 동계의 구성원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동계가 형성되고 운영되었다고 생각한다. 명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동계의 여러 특성이 결사체에 좀 더 부합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간의 동계 논의에서 많은 논자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모아서 정리하면 동계의 실체와 성격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다. '동계는 특정 시점에 인간의 의지에 의한 기금 모집으로 시작된다. 동계의 구성원은 동 거주민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동계는 구성원이 추구하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가지고 외부의 여러 압력에 대응한다.' 그런데 같은 실체를 두고 어떤 이는 동계를 결사체로, 어떤 이는 공동체와 결사체의 중간적인

무언가로, 어떤 이는 게노센샤프트의 번역어인 공동체라고 부른다. 이처럼 같은 실체를 두고 비슷한 특성을 지적하는데도 정작 핵심 개념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스럽게 느껴진다.

2) 왜 공동체인가? - 인적 결집의 요인

어떠한 개념어를 구사하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생활을 공유하는 지역 내 인적 결합'이라는 심희기의 정의에는 대체로 동의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인적 결합을 추동하는 요인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어떤 동네에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동계에 소속된다는 개념은 앞에서 이미 여러 차례 반박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빈번한 이주가 가능했던 조선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

많은 연구에서 강조되는 것이 동계가 부세 공동납과 관계된다는 것이다(이용기 2017; 김건태 2021). 주지하다시피 19세기 이후 면→동리로 이어지는 행정단위별 공동납이 활성화되었다. 이 때 김건태는 동민(洞民) 간의 호혜라는 '내부적 요인'이 아니라 공동납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동민 간의 연대의식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본다(2021, 405쪽). 이러한 주장은 19세기 면에 할당되는 부세에 대해 면중(面中)에서 공동납으로 대응하고 있었다는 사례 분석과도 연결되어(송양섭 2019) 행정단위에 조응하는 동계(동리단위 공동납) → 면계(면단위 공동납)의 구조를 상정할 수 있다.

안승택은 개인에게 닥치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체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안승택 2014). 그는 인위적으로 재물을 추렴하여 공동체적 사회관계를 만들어내어, 인간이 집단에 소속되었다는 안정감을 얻기 위해 계를 만들었다고 보았다. 재물은 공동체적 사회관계를 파괴하는 힘이 될 수도 있지만, 계의 경우에서처럼 공동체적 사회관계를 창설하고 유지·강화하는 힘이 될 수도 있다. 계의 구성원은 돈을 냈기에 주체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채권감각/최초의 증여' 등) 그 안에서 비슷한 처지의 구성원끼리 연대의식도 생겨날 수 있다(38쪽).

19세기 중반 이후 어떤 시점에 동리 범위의 동계가 사람들 사이에서 핵심적이면서도 기초적인 인적 결합으로 작용하며 이를 중심으로 여러 목적계들이 상호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렇다면 어째서 '동리'가 인적 결합의 기초적인 중심이 되었는지, 왜 '동리'를 중심으로 자치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3) '19세기'의 '동리(洞里)'

역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공동체 연구를 바라볼 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개념어의 절대화이다. 예를 들어 '동'이나 '동계'가 시간과 관계없이 동질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 개념어가 시간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아울러 심희기(2021)는 동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어, 즉 '동중', '동회', '촌락', '행정동리', '자연동리' 등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거나 착종된 채 그간 연구에 활용되어 왔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연구의 기초가 되는 용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간단하게 조선 행정단위의 변천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 초에는 지방관이 파견되는 군현을 중심으로 방위에 따라 면(面)을 설정하고 면 아래에 리(里)를 설정하였다(『경국대전』 호전 호적조). '동'은 대체로 '리'와 혼용된다. 이후 인구 증가 및 국가 행정력의 강화로 인하여 면과 리의 규모가 모두 쪼개지기 시작하였다. 거칠게 말하면 18세기 이후 면(面)은 대체로 조선전기 리의 규모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18세기~19세기 초 분동(分洞)의 커다란 물결을

맞으며 리는 더욱 세분화되었다. 또한 행정의 기본 단위인 행정동리는 자연촌락이라고 칭할 법한 여러 단위를 합친 것이다. 분동 과정에서 일부 자연촌락은 행정동리로 부상하였고, 일부는 행정동리 아래에 드러나지 않는 실체로 잠복되어 있었다. 조선인들은 행정동리도 동리로 불렀고, 자연촌락도 동리로 불렀다. 1896년 신호적제도 실시 이후 대체로 북쪽 지역에서는 리 예하의 동이라는 새로운 행정단위가 생겨났고 남쪽 지역에서는 호적에 기재되는 행정동리의 숫자가 급증하였다. 이후 1914년에는 조선총독부에 의한 대대적인 행정편제 개편이 있었기에 20세기의 동리는 앞서의 동리와 또 다른 것이다.(이유진 2021)

시기별로 '동리'의 의미에 차이가 있으므로, '동리'를 기반으로 형성된 '동계' 역시도 시기별로 의미하는 바가 다를 가능성이 있다. 규모만 보아도 16세기의 동리는 18세기로 치면 면에 준하는 큰 단위이고, 19세기의 동리는 최하위 행정단위 혹은 더 작은 자연 촌락을 동시에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16세기의 동계와 19세기의 동계, 일제강점기 이후의 동계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논의의 전제로 해야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19세기 동계가 행정동리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는지 자연촌락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는지도 밝혀야 한다. 같은 동계도 시기별로 규모와 성격이 다를 수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김건태 2019, 39-40쪽). 이러한 관점에서 장흥 어서리 동계가 19세기 행정단위의 공동납에 대응하기 위해서 형성되었으나, 세월이 지나며 마을자치공동체로 전환되었다는 이용기의 주장은 동계의 역사적 변천을 고려하고 있어 주목된다(이용기, 2017). 기존의 공동체vs결사체의 구도를 굳이 끌어온다면 어서리 동계는 결사체로 시작되었다가 공동체로 귀결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아울러 그간의 동계 연구에서는 사례 연구를 축적하여 그 위에서 공동체의 특성을 찾아내고 정의하는 데에 힘을 쏟았기에 지역적 차이는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 조선에서 '동계', '동중', '동회' 등의 의미가 지역별로 차이가 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적절한 개념화와 일반화는 학문의 영역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다만 일반성과 특수성의 사이에서 정확히 어느 지점에 균형점을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다양한 연구가 축적되면서 시간의 흐름과 변천, 공간적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심희기, 2021, 「조선후기 촌락공동체 부재론에 대한 비판」, 『동북아법연구』 Vol.15 No.2

______, 1992, 『한국법사연구 : 토지소유와 공동체』, 영남대학교출판부

김건태, 2019, 「조선후기 마을 사람들의 관계 맺기」, 『東亞文化』 57

______, 2021, 「두레 생성과 해체 원인」, 『한국문화』 97,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김필동, 2001, 「서평 『맛질의 농민들』」 『경제사학』 31

______, 2002, 「한국 전통사회의 공동체와 개인」

송양섭, 2019, 「18~19세기 동래부 동하면의 '면중(面中)'과 잡역운영」, 『역사와 현실』 112, 한국역사연구회

안승택, 2014, 「한 현대농촌일기에 나타난 촌락사회의 계(契) 형성과 공동체원리」, 『농촌사회』 24집 1호

이영훈, 2001, 「18·19세기 大渚里의 身分構成과 自治秩序」, 『맛질의 농민들』, 일조각

이용기, 2017, 「19세기 동계의 마을자치조직으로 전환에 관한 시론」, 『사학연구』 128

이유진, 2021, 「조선후기-대한제국기 호구 파악 방식의 변화 양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공동체 논의의 쟁점과 미래

심희기, 조선후기 촌락공동체 부재론에 대한 비판 (『동북아법연구』 VOL.15 NO.2, 2021)” 비평

이유진
(연세대 법학연구원)

목차

1. 들어가며
2. 이영훈의 촌락공동체 부재론 비판
3. 심희기의 촌락공동체 규정
4. 동계 및 공동체 연구의 논점과 보완점
   1) 동계의 성격 정의: 공동체와 결사체
   2) 왜 공동체인가: 인적 결집의 요인
   3) '19세기'의 '동리'와 동계

1. 들어가며

- 공동체란 무엇인가
  - 법학, 사회학, 경제학, 역사학 등에서 관심
  - 퇴니스(Tönnies)의 공동체와 결사체 구분 활용
  - 논자마다 개념 구사 방식, 세부 기준이 다름

공동체 Community Gemeinschaft	결사체 Association Gesellschaft
자연발생적 지연地緣	인위적 발생 공동목표를 위해 결집

2. 이영훈의 촌락공동체 부재론 비판

요건	이영훈(2001)	심희기(2021)
1	구성원 상호간에 권리·의무의 일정한 차별은 있어도 일방이 타방의 인신을 신분적으로 지배하는 일은 배제될 것	**구성원들 사이의 평등성**
2	자발적 가입의사와 무관하게 생득적으로 강한 귀속의식을 느끼는 대상일 것	**가입·탈퇴의 선택불가능성**
3	개별 구성원으로부터 일정하게 분리된 독자의 권위 내지 인격으로 성립할 것	**촌락의 독자적인 법인격**
4	공동의 재산이 소유된 위에 추구되는 공동의 경제적 이해가 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 재생산에 있어서 긴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	**촌락자원의 공동이용**
+5	인간의 사회적·경제적 생활에 긴요한 제반 공공업무가 하나의 통합적 공동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복수의 임의적 결사체에 의해 분산적으로 수행되었음(282쪽)	**동리가 수행하는 공동 업무의 통합성·광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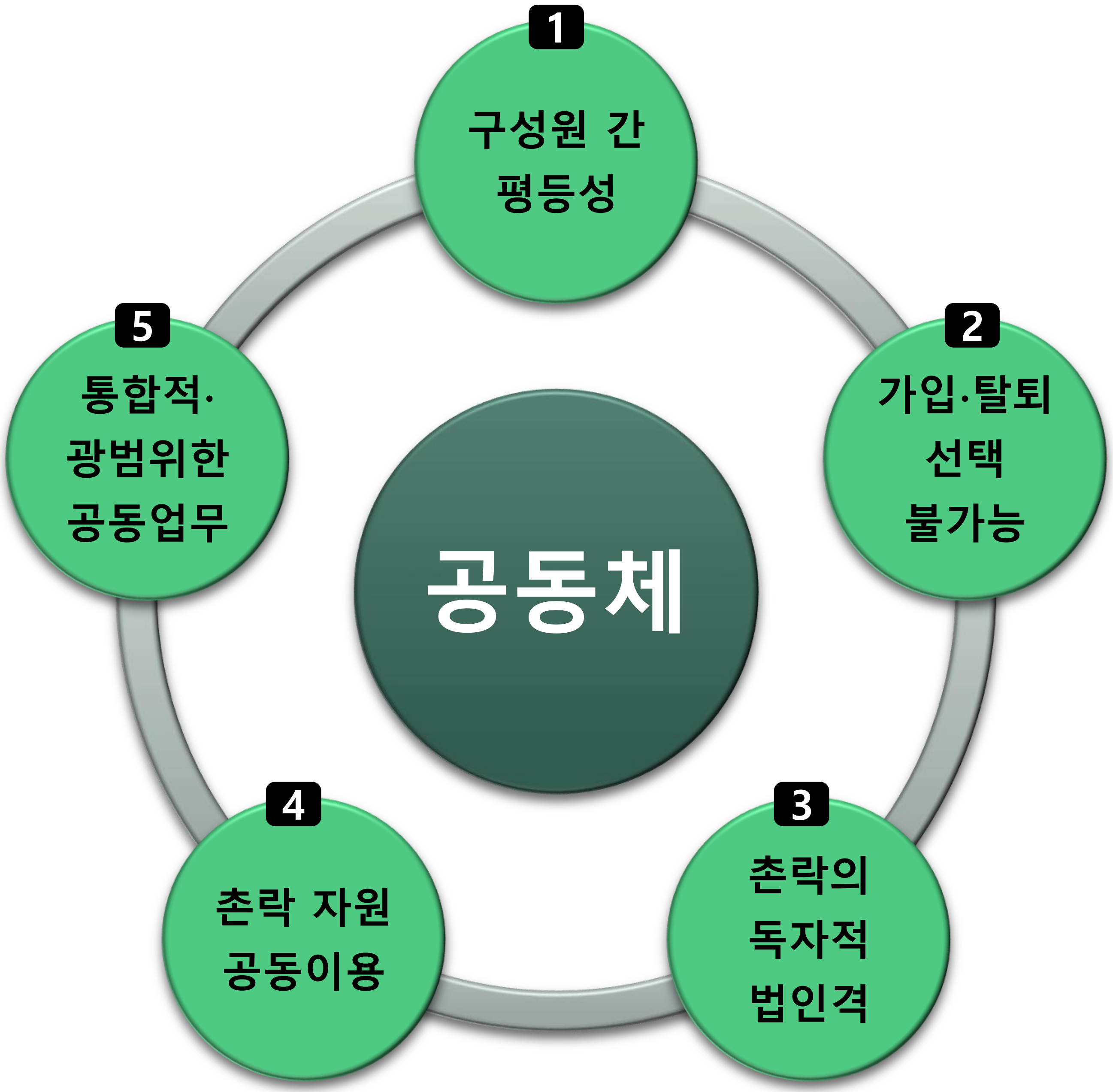

이영훈의 공동체 성립 요건

- 이영훈의 경상도 예천군 대저리 동계 분석
  - 특징
    - 양반 신분이 하민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요건1] 구성원 평등성 불성립)
    - 자발적인 가입 의사와 기금 참여에 기초([요건 2] 가입·탈퇴의 선택 불가능성 불성립)
    - 하나의 인격(人格)으로서 승화된 공동체를 발견할 수 없음([요건3] 촌락의 독자적 법인격 불성립)
  - 다층이심의 연망
    - 동리는 자연 내지는 지리적 실체에 불과하고, 인간은 그 안에서 다양한 목적을 가진 여러 연망과 결사체로 결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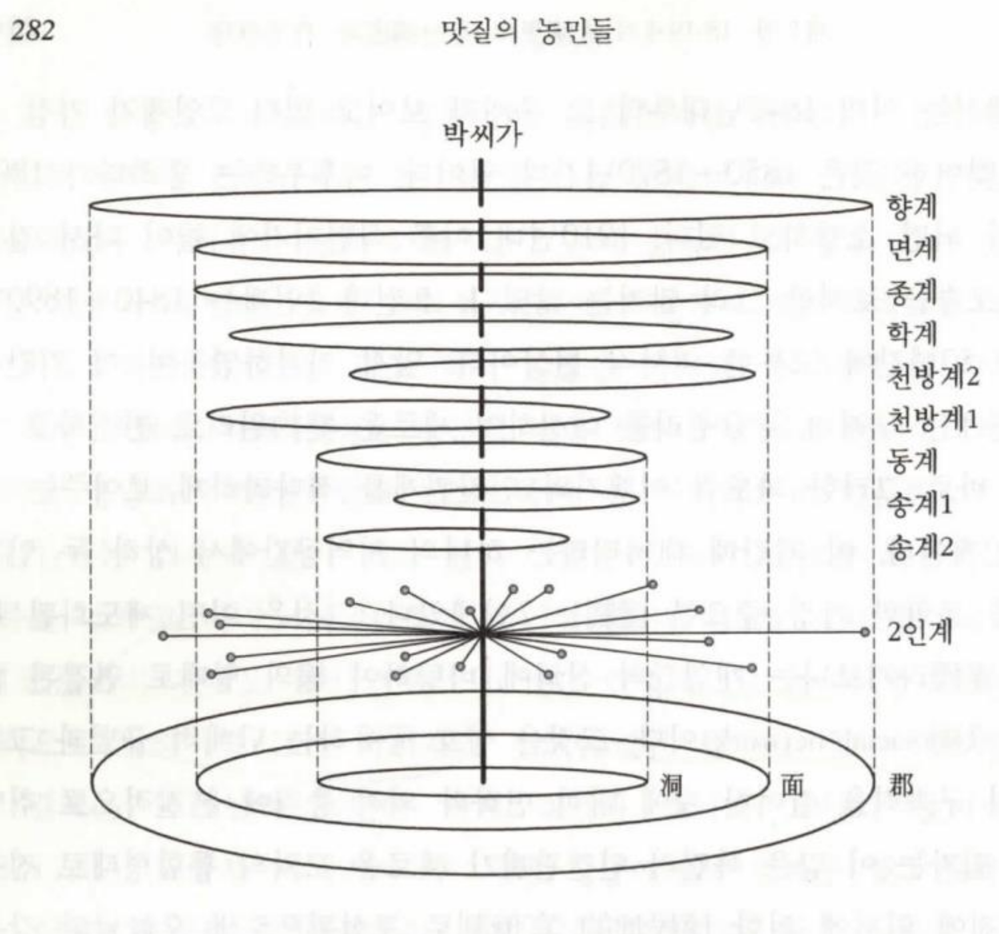

그림 7-3. 19세기 대저리 모형도

- 심희기의 비판
  - [요건1] 구성원들 사이의 평등성 ⇒ 잘못된 기준이므로 철회되어야
    - 중세 유럽이나 근세 일본의 촌락에서 구성원끼리의 평등성 전제 X
    - 조선 신분제에서 양반과 하층민은 상호호혜적인 성격을 가지기도 함
    - 거제도 항리의 여객주인·어조 공동소유, 부세 공동납 대응
  - [요건2] 가입·탈퇴의 선택 불가능성 ⇒ 잘못된 기준이므로 철회되어야
    - Cf. 여러 연구에서 주장
    - 영국 중세 촌락에서 주민 모두가 촌락 구성원으로 취급되지 않는 경우 有
    - 조선의 동계는 가입 자격에 관한 다양한 사례가 있음

- [요건3] 촌락의 독자적인 법인격
  - 중세 영국 촌락, 일본 근세 촌락에서는 마을이 법적 내지는 단체적 실체
  - 저곡리 동계는 동답(洞畓) 소유, 회계, 동회(洞會) 보고 등 근세적 법인격을 가진 실체
  - '~거민등장(~居民等狀)', 동의 존위(尊位)·두민(頭民) 명의의 소송 有
  - 통감부는 동리, 동계, 서원, 향교 등에도 법인격이 부여되었다고 판단

- [요건4] 촌락자원의 공동이용
  - 이영훈의 논증 부족
  - 중세유럽처럼 토지를 촌락이 소유하여 구성원이 지분을 가지고 공동경작하는 사례 없음
- + [요건5] 동리가 수행하는 공동업무의 통합성·광범성
  - 대저리 동리의 포괄적 공동업무: 동제洞祭, 서당, 공동납, 부조扶助, 치안, 공동노동 주관(ex.두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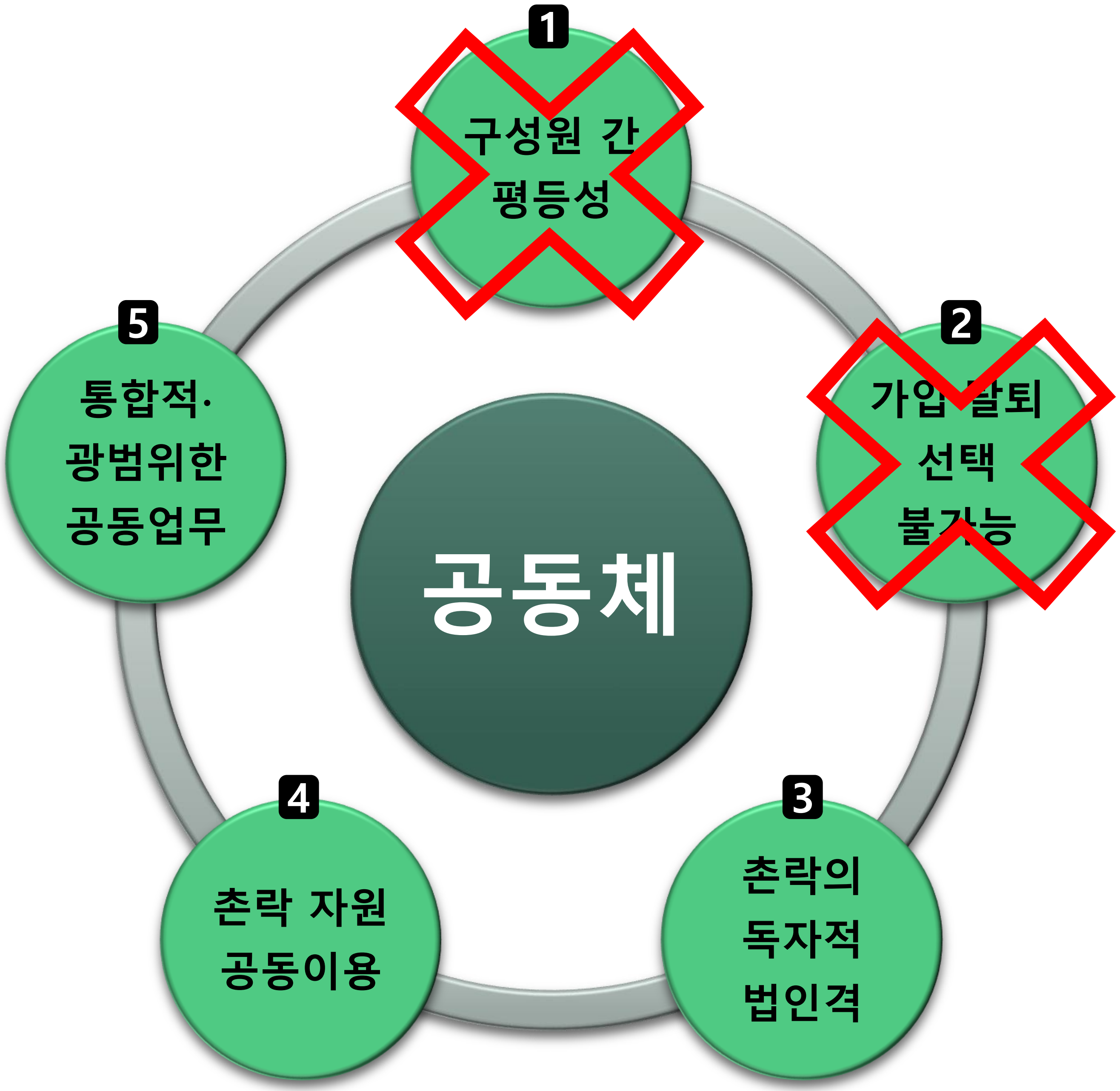

- [요건1] [요건2] 철회
  - 주민 모두가 구성원이 되는 촌락은 이상향일뿐
  - 공동체와 결사체의 양자택일적 이분법 비판
- [요건3] [요건4] [요건5]를 만족하는 동계 사례 제시
  - 원주 요선계, 충청도 옥천·괴산의 동리 등

공동체 Community Gemeinschaft	결사체 Association Gesellschaft
자연발생적 지연地緣	인위적 발생 공동목표를 위해 결집

3. 심희기의 촌락공동체 규정

- <u>게노센샤프트(Genossenschaft) = 공동체</u>
  - 독일 법학자 기르케(Gierke)의 게노센샤프트 정의
    - 구성원(Genossen)이 생활상의 공동 이익을 추구, 이를 위해 물적 수단으로 토지를 공동소유하여 생산활동을 하거나 수익을 집단 운영 차원에서 처분·관리

      ⇒ 구성원들의 종교적·문화적·경제적·사회적·법적·정치적 등 다양한 공동목적의 성취를 위한 인적 결합

공동체 Community Gemeinschaft	공동체 Genossenschaft	결사체 Association Gesellschaft
자연발생적 지연地緣	다양한 공동목표 (생활전반) 인적 결합 물적 토대	인위적 발생 공동목표를 위해 결집

조선의 동계 = 촌락공동체

- 공동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생활을 공유하는 지역 내 인적 결합’
- 동계: 지역생활공동체
  - 전답(田畓) 소유, 집회 장소(정자 등), 임야·제방·도로 관리, 상구(喪具)· 혼구(婚具) 등의 의례 용품 소유
  - 구성원간 긴밀한 인간적 결합, 전반적인 생활 공유, 공동 이익 추구, 상호부조적 권리-의무관계
- [요건1] 구성원들 사이의 평등성, [요건2] 가입·탈퇴의 선택불가능성 부정
  - 촌락 경계 내에 거주하는 촌락민 전부가 동계의 구성원일 필요는 없음
  - 자연발생인가 구성원의 의지에 따른 자발적 발생인가는 부차적 문제
  - 집단 내부와 외부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

4. 동계 및 공동체 연구의 논점과 보완점
1) 동계의 성격 정의: 공동체와 결사체

- 공동체 – (   ) – 결사체
  - ‘느슨한 공동체’ / ‘이차적 공동체’(김필동)
  - ‘제도화된 조직체’(이용기)
- 다층이심의 연망(이영훈) 개념 비판 → 동계의 중심성 강조
  - 포도나무에 달린 여러 포도송이(안승택)
  - 동계를 중심으로 한 다수의 목적계의 네트워크(이용기)

- 계전契錢 출납 분석 연구(김건태 2019, 2021)
  - 계는 계답의 지대나 계전의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 '확대'
  - 동 주민이 아니어도 동계 참가 가능
  - "마을 주민의 의지에 따른 관계 맺기의 결과" (⇒ 결사체)
- "공동의 목표 달성, 외부에 대항, 기금 조성 및 확대" ⇒ ?

공동체 Community Gemeinschaft	공동체 Genossenschaft	결사체 Association Gesellschaft
자연발생적 지연地緣	다양한 공동목표 (생활전반) 인적 결합 물적 토대	인위적 발생 공동목표를 위해 결집

4. 동계 및 공동체 연구의 논점과 보완점
2) 왜 공동체인가? – 인적 결집의 요인

- 왜 '동리'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결집'하는가
  - 부세 공동납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추동
  - 개인에게 닥치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공동체 형성(안승택)
    - 돈이 개재되면서 권리 주장, 연대의식 → 공동체적 사회관계 창설·유지·강화

4. 동계 및 공동체 연구의 논점과 보완점
3) '19세기'의 '동리'와 동계

- '동' → '동계'의 범위 및 의미
  - 행정단위 변화와 동리
    - 18·19세기 면리 세분화(분동) → 1896년 이후 리 – 동 체제 or 동리 세분화 → 1914년 행정편제 개편
    - 동=리, 동리=행정동리 or 자연동리
  - 시기별로 동계의 성격이 다를 것
    - 같은 지역 동계의 성격 변화(김건태)
    - 공동납에 대응하기 위해 형성 → 마을단위 자치공동체(이용기)
  - 전 지역에서 같은 의미로 용어를 사용할 것으로 전제

학술논문 검색서비스 earticle

동북아법연구
제15권 제2호

ISSN : 1976-5037(Print)

조선후기 촌락공동체 부재론에 대한 비판

심희기

To cite this article : 심희기 (2021) 조선후기 촌락공동체 부재론에 대한 비판, 동북아법연구, 15:2, 313-364

① earticle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학술교육원은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earticle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www.earticle.net

Download by : 165.132.14.104 Accessed : Wednesday, September 21, 2022 5:55 PM

東北亞法研究 第15卷 第2號 (2021년 9월) 313~364면
http://dx.doi.org/10.19035/nal.2021.15.2.13

조선후기 촌락공동체 부재론에 대한 비판*

심 희 기**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5.132.14.104 at Wednesday, September 21, 2022 5:55 PM

≪목 차≫

Ⅰ. 문제의 제기 : 촌락공동체 부재론의 탄생
Ⅱ. 근세 조선의 촌락공동체 존부에 관한 학설의 개황(槪況)
Ⅲ. 김필동의 논평
Ⅳ. 이영훈이 제시한 공동체・촌락공동체가 되기 위한 5가지 요건
Ⅴ. '근세조선의 동리'의 사회적 성격에 대한 이영훈의 추상(抽象) : '다층이심(多層異心)의 연대(連帶)'설의 제창
Ⅵ. 충청북도 옥천군과 괴산군의 사례
Ⅶ. 1744년에 결성된 요선계・요선동리의 분석
Ⅷ. 결어 : 조선 촌락사 연구 수준 제고를 위한 제언

요 약

2001년에 근세 조선에서는 촌락공동체가 검출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영훈 교수)이 논문의 형태로 한 책자에 실려 간행되었다(Ⅰ). 만약 이 주장이 역사적 사실에 근접하는 주장이라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운동가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물론 이 주장과 다른 견해들(Ⅱ, Ⅲ)도 있다. 이 논문은 '근세 조선 촌락공동체부재론'을 이론과 실증의 두 측면에서 상세히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역사적 사실에 근접하여 보려는 작은 시도이다. 논증의 순서는 먼저 근세 조선의 촌락공동체 부재론의 논거를 하나씩 드러내 논평(Ⅱ, Ⅲ, Ⅳ)과 검증(Ⅴ, Ⅵ)을 가한 후 결어에 갈음하여 향후 검토되어야 할 연구과제를 제시(Ⅷ)하는 것이다.

이영훈이 제시한 공동체・촌락공동체가 되기 위한 5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구성원 사이의 평등성[요건1], 가입과 탈퇴의 선택불가능성[요건2], 촌락공동체는 개별 구성원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의 인격이 인정될 것[요건3], 산림과 천택을 공동소유・공동 이용할 것[요건4], 동리가 수행하는 공동업무는 광범할 것[요건5]이 그것이다.

필자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영훈이 제시하는 구성원 사이의 평등성[요건1], 가입과 탈퇴의 선택불가능성[요건2]은 적절하지 않은 기준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NRF-2019S1A5C2A02082825).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둘째, 조선의 촌락에는 개별 구성원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의 인격이 인정되었다[요건3]. 이를 부정한 이영훈의 판단은 오류이다.

셋째, 근세조선의 동리가 이영훈의 [요건5]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섣불리 판정할 일은 아니다.

넷째,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근세 조선의 동리가 이영훈이 제시하는 [요건4(촌락자원의 공동이용)]를 충족하는지 여부이다. 필자는 '토지의 공동소유・공동이용'을 공동체 존재의 충분조건으로 볼 수는 있지만 필수조건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산림과 천택을 공동소유・공동이용한 사례가 적다고 촌락공동체의 카테고리에서 배제하는 것은 지나친 서구중심주의적 사고방식이 될 것이다.

총체적으로 볼 때 이영훈의 촌락공동체부재론은 이론과 실증 모두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성급한 판단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근세 조선의 촌락과 근세 일본의 촌락의 비교는 김현영이 첫발을 내디딘 데 불과하다. 향후에 김현영과 이영훈의 문제의식을 본받아 근세 조선의 촌락과 근세 일본의 촌락의 비교 수준을 고도화하고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주제어: 촌락공동체, 동계, 근세적 법인격, 촌락의 자치, 입규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5.132.14.104 at Wednesday, September 21, 2022 5:55 PM

Ⅰ. 문제의 제기 : 촌락공동체 부재론의 탄생

한국의 마을공동체사업 및 활동은 2000년 이후 도시정책이 재생으로 전환되면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NGO, 민간단체, 시민들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가장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서울시는 2012년 3월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그 해에 부모 커뮤니티, 마을 미디어 등 400개가 넘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전개하였다.[1] 한국의 마을공동체사업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의 조례(條例)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2]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한 일본의 경우, 관련 조례의 수가 3,000개에 달한다[3]고 한다.

그런데 2001년에 근세 조선에서는 촌락공동체가 검출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논문의 형태로 한 책자에 실려 간행되었다. 만약 이 주장이 역사적 사실에 근접하는 주장이

1) 김홍주, "조선 향촌규약에 나타난 마을공동체 운영 특성 : 고현향약을 중심으로", 『국토연구』(2013.12)[이하 이 논문은 김홍주(2013)으로 인용함], 77면.

2) 노주은・박병현・유영미,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분석 : 부산지역 14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제24권 제4호(2021), 370면.

3) 노주은・박병현・유영미, 앞의 논문(2021), 372면.

라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운동가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이 논문은 '근세 조선 촌락공동체부재론'을 상세히 분석하여 조금이라도 역사적 사실에 근접하여 보려는 작은 시도이다. 이하에서 근세 조선의 촌락공동체 부재론의 논거를 하나씩 드러내 논평을 가한 후 결어에 갈음하여 향후 검토되어야 할 연구과제를 제시하려고 한다.

Ⅱ. 근세 조선의 촌락공동체 존부에 관한 학설의 개황(槪況)

2001년에 일본의 어느 경제사학자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전체의 촌락사를 비교사적 방법으로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 "이 지역에서는 공동체가 있었던 사회와 공동체가 없었던 사회의 대조(對照)가 있다. 공동체가 있었던 사회는 일본과 베트남 (…) 중국, 조선은 먼 과거는 몰라도 소농민 사회로서 성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같은 촌락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4)]

이 경제사학자는 칼 맑스의 저술인 '전(前)자본주의적 생산의 여러 형태들'의 기본논지를 따르는 계열의 일본의 선행하는 맑스주의 학자들의 저술을 섭렵한 후 위와 같은 논평을 한 것이다. '전자본주의적 생산의 여러 형태들'의 기본논지는 생산수단인 토지(택지와 채마밭, 경지, 산림 등)를 공동소유・공동이용하기 위하여 공동체의 발생이 불가피하였고, 공동체의 해체 이후에 비로소 자본주의가 생성된다는 점이다.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거의 비슷한 시기(2001년)에 한국에서 발표된 이영훈 교수(이하 '이영훈'으로 약칭함) 논문의 결론도 비슷하다. 이영훈은 '토지의 공동소유・공동이용'을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경북 예천군 저곡면 대저리의 박(朴)씨 가문이 남긴 일기를 비롯한 풍부한 자료들이 전하는 18세기초 이래 20세기 동안의 대저리[5)] 동리(洞里)의 역사를 추적하여 치밀하게 분석작업을 경유한 후 18세기초~20세기초 사이

4) 福本勝清, "戦後共同体論争に関する一覚書", 『明治大学教養論集』통권 349호(2001.9) [이하 '福本(2001)'로 인용함], 30면.

5) 이영훈의 치밀한 분석에 의하면 대저리는 4개의 자연부락[백학(白鶴), 텃골(基洞), 대저하리(大渚下里), 대저상리(大渚上里)]을 아우르는 행정동리였다. 그러나 '부락(部落)'은 근세 일본의 특성이 드러나는 특수한 명칭이므로 '자연촌' 혹은 '자연동리'라는 용어사용이 더 적절하다.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5.132.14.104 at Wednesday, September 21, 2022 5:55 PM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5.132.14.104 at Wednesday, September 21, 2022 5:55 PM

의 대저리에서 “주민을 성원으로 하는 통합적 기능과 권위의 주체로서 공동체의 존재는 발견되지 않는다.”[6]는 결론을 내렸다. 미리 언급하여야 할 사항은 이영훈이 상상하는 촌락공동체는 ‘주민(inhabitants)을 성원으로 하는 동리(洞里)’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근세 조선 촌락공동체부재론’에 동의하지 못하는 연구자들이 있을 것이다. 2002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김필동 교수(이하 ‘김필동’으로 약칭함)는 공동체로 판정하기 위한 7가지 속성을 제시한 후 “7가지 특징들의 대부분(적어도 상당 부분)을 갖고 있는 집단・조직”이라면 공동체로 볼 수 있다[7]고 주장하고, 그런 관점에서 김필동은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공동체로 종족공동체(문중)와 촌락공동체를 지목[8]하였다. 상세한 논증은 없지만 김필동이 상상하는 촌락공동체도 ‘주민을 성원으로 하는 동리(洞里)’였다. ‘주민을 성원으로 하는 동리(洞里)’를 촌락공동체로 설정하면서도 이영훈은 부재설, 김필동은 존재설로 갈리는 기이한 모습이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또 하나의 다른 견해가 있다.

16세기 이후에 조선의 사료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동계(洞契)에 관한 연구논문이 1980년대 말부터 지속적으로 발표되었는데 일부의 연구자들은 동계를 근세 조선의 ‘촌락공동체’로 지목[9]하고 있다. 여기서 근세 조선의 촌락공동체의 존부에 관한 3가지 학술적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제1설은 16세기부터 사료상 등장하는 동계를 근세 조선의 촌락공동체로 지목하는 입장(이하 ‘**동계촌락공동체설**’로 약칭함)이다.[10] **제2설**은 계(契)의 공동체성을 부정하고 그런 맥락에서 동계도 공동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동계와 구별되는 ‘주민을 성원으로 하는 동리’가 촌락공동체의 후보인데 근세 조선에서는 ‘주민을 성원으로 하

6) 이영훈, “18・19세기 대저리의 신분 구성과 자치 질서”, 안병직・이영훈 편, 『맛질의 농민들-한국근세촌락생활사-』(일조각, 2001)[이하 이 논문은 ‘이영훈(2001)’으로 약칭함], 297면.

7) 김필동, “한국 전통 사회의 공동체와 개인”, 『사회와 이론』 창간호(통권 제1집)(2002)[이하 이 논문은 ‘김필동(2002)’으로 약칭한다], 19~20면.

8) 김필동(2002), 25~33면.

9) 예를 들어 김홍주(2013), 82면 이하는 동계를 촌락공동체로 간주하였다.

10) 심희기, 『한국법사연구 : 토지소유와 공동체』(영남대학교출판부, 1992) ; “1900~1910년 무렵에 동계가 소멸된다는 견해는 재고를 요한다.”고 주장하는 이용기는 “동계는 신분제적 성격을 갖는 사족 중심의 향촌지배기구에서 벗어나 마을 단위의 생활공동체적 성격의 동계로 전화(轉化)되고 있었다. 이것은 동계가 마을의 자율적 운영의 주체, 즉 마을자치조직으로 재정립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파악한다. 이용기, “19세기 동계의 마을자치조직으로 전환에 관한 시론”, 『사학연구』128호, 2017[이하 이 논문은 ‘이용기(2017)로 약칭함.], 320면. 이해준, 『조선시기 촌락사회사』(민족문화사, 1996)[이하 이 책은 ‘이해준(1996)’으로 인용함] 201면 이하는 ‘동계=결사체, 촌계류=공동체’설이다.

는 공동체적 동리'가 검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영훈)이다. **제3설**은 계의 공동체성을 부정하지만 촌락 자체가 공동체라고 보는 설(김필동, 이하 '**촌락자체공동체설**'로 약칭함)이다. 김필동은 "촌락은 그 자체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공동체'[11]를 이루는 것이지만, 좀 더 구체적인 촌락의 모습들은 다양한 2차적 공동체 및 자발적 결사체들의 복합으로 인하여 더욱 활성화된다."[12]고 하여 좀 더 구체적인 구상은 김필동의 향후의 저술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하에서는 이영훈의 '**공동체적 동리 부재설**'에 대하여 상세한 논평을 가하고 싶다. 이영훈의 논문은 2001년 당시의 학계 상황에서는 실증과 이론 양면에 걸쳐 뛰어난 논문이었지만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현재의 상황에서는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영훈 논문에 대한 철저한 비판적 고찰은 향후 근세 조선의 촌락사 연구에서 필요한 연구과제를 찾는 데 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Ⅲ. 김필동의 논평

이영훈의 논문에 대하여 처음으로 논평한 학자는 김필동이다. 그는 이영훈이 제시한 공동체 개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 "이 교수는 나름대로 공동체의 개념을 규정짓고, 19세기 조선의 촌락(좁게는 대저리)은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이 교수의 공동체 개념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생각을 평자는 갖게 된다. 이 교수는 네 가지 정도의 요건을 들고 있는데, 이를 온전하게 충족시킬 공동체는 역사적으로 쉽게 찾기 어려울 것이다."[13]

이영훈은 자신의 논문의 서두에서 자신의 연구초점이 근세 조선 촌락생활사의 '비교사적 특질'의 검출에 있음을 명시[14]하였다. 그러나 이영훈은 조선 후기 촌락 분석의 비교 대상이 되는 촌락이 '어느 시기 어느 지역의 촌락'인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

11) 福本(2001), 30면에는 근세 일본의 단단한 촌락공동체를 'tight 공동체', 그보다는 느슨한 공동체를 'loose 공동체'라고 지칭하는 견해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12) 김필동(2002), 34면은 "이런 맥락에서 두레나 황두, 향도, 동회, 동제, 각종 계, 그리고 동계 등이 주목되고, 그밖에 촌락 내부의 근린집단간의 좀 더 제한적이고 소규모적인 연대의 형태들도 관심을 끌만하다"고 덧붙인다.
13) 김필동, "맛질의 농민들 서평", 『경제사학』 31권 (2001), 191면.
14) 이영훈(2001), 245면, 250면.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5.132.14.104 at Wednesday, September 21, 2022 5:55 PM

이영훈이 비교대상으로 설정한 타국의 촌락이 '어느 시기 어느 지역의 촌락'인지를 분석해 내지 못하면 이영훈의 노작(勞作)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향후에 무엇이 더 연구되어야 하는지를 추출하기도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영훈이 19세기 조선 촌락의 비교 대상으로 설정한 타국의 촌락이 '어느 시기 어느 지역의 촌락'이었을까를 모색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영훈이 제시한 5가지 요건들을 징후발견적 독해(a symptomatic reading)의 방식으로 분석해 보겠다. 김필동은 이영훈이 공동체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하여 제시한 요건을 "온전하게 충족시킬 공동체를 역사적으로 쉽게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논평하였지만 이영훈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비교대상은, 1차적으로는 근세 일본의 촌락공동체[무라, 村]이고, 2차적으로는 중세 유럽의 촌락공동체로 보인다. 그가 사용하는 전문용어들은 대체로 일본의 촌락공동체 관련 문헌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고, 그가 언급하는 '주민을 성원으로 하는 동리(洞里)' 발상은 중세 영국의 촌락(vill, village community, village commune)에 관한 저작물에서 시작된 것[15]이기 때문이다.

Ⅳ. 이영훈이 제시한 공동체・촌락공동체가 되기 위한 5가지 요건

이영훈이 촌락공동체[16]의 존재를 검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제시한 5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4가지 요건([요건1]~[요건4])은 직접 명시되었지만 1가지 요건([요건5])은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 "어느 '인적 단체'가 공동체로 규정되려면 적어도 다음의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 [요건1] 구성원 상호 간에 권리 의무의 일정한 차별은 있어도 일방이 타방의 인신을 신분적으로 지배하는 일은 배제될 것,
> [요건2] 그런 위에 자발적 가입의사와 무관하게 생득적으로 강한 귀속의식을 느끼는 대상일 것[이하 이 요건은 '가입・탈퇴의 선택불가능성' 요건으로 약칭함],
> [요건3] 그러한 한에서 [(촌락)공동체가 : 필자 추가] 개별 구성원으로부터 일정하게 분리된 독자의 권위 내지 인격으로 성립할 것,

15) 대표적인 저술은 W. O. Ault, "The Vill in Medieval England,"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26 (1982), pp.188-211; C. Dyer, "Power and Conflict in the Medieval English Village," in *Medieval Villages: A Review of Current Work*, ed. D. Hooke (Oxford, 1985), pp.27~32.

16) 이영훈은 '공동체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적었지만 내용상 '촌락공동체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해석된다.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5.132.14.104 at Wednesday, September 21, 2022 5:55 PM

[요건4] 공동의 재산이 소유된 위에 추구되는 공동의 경제적 이해가 구성원의 사회적 · 경제적 재생산에서 긴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17)

“[요건5] 동리가 수행하는 공동업무의 통합성”18)

1. 공동체가 취급하는 공동업무의 통합성 · 광범성([요건5])

이영훈은 촌락을 인적 ‘단체’로 설정(인용문의 첫 부분)하고, 재생산이라는 경제사적 용어를 구사하고 있으며([요건4]), 촌락이 수행하는 (사회적 · 경제적 생활에 긴요한 제반 공동) ‘업무’([요건5])라는 용어를 구사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필자는 위와 같은 세 가지 특성을 공유하고, 명청(明淸) 시대의 중국 촌락과 근세 일본의 촌락을 비교하는 일본인 연구자(아다치 게이지)의 저술에서 다음과 같은 매우 유사한 논증을 발견하였다. 이 논증이 이영훈의 발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므로 그 부분을 상호비교해 보자.

첫째, 근세 일본의 촌락공동체[村=무라]를 단체로 보는 아다치의 논증은 다음과 같다.

> “일본의 봉건사회는 자율능력이 있는 **단체**가 사회의 기반이었다. 무라[村]는 작은 국가로서 이미 하나의 권력이었다. … 단체의 지배자인 영주의 지배는 단체의 관리능력의 어느 부분을 특정 개인이 집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 단체에 대한 지배는 하위 단체와의 일정한 합의를 바탕으로 그 단체의 자립능력을 매개로 실현된다. 연공(年貢)은 영주가 직접 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무라우께[村請]라는 형태로 무라가 영주와 지불계약을 맺고, 무라의 내부행위로 징수행위에 나섰다. 상급권력의 지배는 사회의 안정적인 **단체규범**을 매개로 하는 강고한 지배였다. … (명청의) 전제국가는 강력하게 사회에 개입했다. 영주편성에 선행하여 독립한 단체로서의 무라가 존재했던 사회와는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19)

---

17) 이영훈(2001), 249면.

18) 이영훈은 “(대저리에서 : 필자 첨가) 사회적 · 경제적 생활에 긴요한 제반 공동업무가 하나의 통합적 공동체(대저리 : 필자 첨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복수의 임의적 결사체(대저리에서 생성된 각종의 목적계들 : 필자 첨가)에 의해 분산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파악하면서 대저리의 촌락공동체성을 부인[이영훈(2001), 282면]하였으므로 촌락공동체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동리가 수행하는 공동업무의 통합성’을 든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19) 足立啓二, 『專制國家史論 : 中國史から世界史へ』(柏書房, 1998)[이하 이 책은 ‘足立(1998)’로 인용한다.], 75면.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5.132.14.104 at Wednesday, September 21, 2022 5:55 PM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5.132.14.104 at Wednesday, September 21, 2022 5:55 PM

이영훈은 공동체가 되려면 문제의 실체가 단체이어야 하고, 그 단체는 일정한 단체규범을 제정하여 실천함을 전제하고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아다치의 논증도 그렇다. 다음에 재생산이라는 경제사적 용어를 사용하고, 또 이영훈이 제시하는 [요건5]와 유사한 내용을 언급하는 아다치의 논증은 다음과 같다.

> "일본의 무라[村]는 **광범한 공동업무**를 수행한다. 도로(道路)의 건설과 수리(修理), 수리(水利)와 하천관리, 이리아이 임야(入會林野)의 관리, 소방 등 개개의 (소)경영이 직접적으로 생산・재생산하는 범위를 넘는 일반적 공동업무를 무라의 업무로서 수행한다. … 중국의 촌락이 집행하는 업무는 극히 한정되어 있다. 화북(華北) 농촌에서 일반적 공동업무로서 수행하는 것은 반드시 전원이 참가하지 않는 묘제(廟祭)를 제외하면 간청(看靑)이라 불리우는 작물(作物)의 절도방지 업무 정도이다. … (중국 촌락은) 촌락에 의한 자기규율능력의 결여를 보여준다. 극히 소극적인 공동업무이다. 일본의 전통 사회에서는 자명하게 (촌락의) 공동업무로 간주되는 여러 업무가 거기(중국 촌락 : 필자 첨가)서는 사적(私的)으로 수행된다. 도로의 수리는 현(縣) 등의 행정기관이 부담을 할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도로에 접한 경지의 소유자가 수행한다."[20]

아다치의 '광범'이라는 표현과 이영훈의 '통합성'이라는 표현은 비슷한 이미지를 담고 있다. 이영훈은 "(대저리에서 : 필자 첨가) 사회적・경제적 생활에 긴요한 제반 공동업무가 하나의 통합적 공동체(동리 : 필자 첨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복수의 임의적 결사체(각종의 목적계 : 필자 첨가)에 의해 **분산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하면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공동체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생활영역이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김필동도 그가 제시하는 7요건 중의 하나로 이 측면을 제시[21]하였다.

요컨대 '광범성'이든 '통합성'이든 촌락공동체의 존재를 말하려면 촌락공동체가 취급하는 생산・생활상의 공동영역(이영훈과 아다치의 용어법으로는 '공공업무' 혹은 '공공재')이 도로의 건설과 수리(修理), 수리(水利)와 하천관리, 토지의 공동이용[예를 들어 이리아이 임야(入會林野)의 공동이용], 소방, (그리고 경찰도 추가할 수 있다) 등 넓어야 한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영훈이 보기에 근세 조선에서 발견되는 계(契)는 달성하려는 목적이 대부분 협소(이른바 목적계)하여 이 요건을 충족시

---

20) 足立(1998), 57~58면.

21) "5) 공동체 생활은 성원들의 생활의 많은 부분(거의 대부분)을 포괄한다. 이 때문에 공동체의 성원들은 공동체의 틀을 벗어나서는 생활하기가 어렵다." 김필동(2002), 19면.

키기 어렵다. 그런데 이영훈이 보기에도 예외적으로 일부의 동계가 취급하는 생산・생활상의 공동영역은 이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22] 또 강성복이 추정하는 충청남도 제원면 용화리의 대동회의는 다음과 같은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 "용화리 대동회의는 아랫말, 웃담(울말), 화상동, 가마골 등 전 주민의 호주가 참석하는 마을 내의 최고회의, 의결구조이다. … 초기의 대동회의는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동사(洞事)의 여러 문제들, 곧 한 해의 품삯, 교량의 증축, 제방의 보수, 동답(洞畓)과 동산(洞山)의 운영, 당제(산신제, 거릿제, 탑제)의 비용 마련 및 제관의 선출, 그리고 그밖에 울력을 내는 문제라든가 주민간의 분쟁 조정 등 잡다한 동중지사(洞中之事)를 논의하는 마을 자치조직으로서 자리를 잡았을 것이다."[23]

강성복의 추정이 맞다면 용화리는 [요건1](구성원 사이의 평등성 요건)을 제외하면 이영훈이 상상하는 촌락공동체에 합치한다. 아마도 이영훈은 [요건1]의 불충족을 이유로 용화리와 대저리의 촌락공동체성을 부정한 듯하다.

그런데 과연 이 측면(공동체가 취급하는 공동업무의 통합성・광범성[요건5])을 촌락공동체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유럽 중세의 촌락공동체를 논한 논자들이 유럽 중세의 촌락공동체의 이념형을 제시한 후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촌락공동체의 존재를 부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은 자기문화중심주의(ethnocentrism)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촌락자원의 공동이용([요건4])

역사가중에서도 경제사가들이 가장 중요시할 요건은 아마도 [요건4]일 것이다. 전(前)자본주의(precapitalism)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은 토지였다. 전자본주의

---

22) 이영훈(2001), 245면은 대저리는 "17~19세기 농촌사회에서의 여느 동 또는 리(이하 동리로 통칭)와 마찬가지로 지방행정의 말단 단위이자 주민의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포괄한 하나의 자율적인 질서공간이었다. '자율적'이라 함은 치안・수리・공동노동・영림・교육 등과 같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가결한 공공업무가, 경제학적 표현으로 공공재가, 관료제를 대신한 주민의 자치로 수행 내지 생산되었다"고 기술하였다. 사정이 그렇다면 대저리의 촌락공동체성을 인정하여야 논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훈은 본문(297면)에서 "18세기초~20세기초 사이의 대저리에서 "주민을 성원으로 하는 통합적 기능과 권위의 주체로서 공동체의 존재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논한다. 어느 입장이 이영훈의 입장인지 애매하지만 이영훈의 궁극적인 진심은 297면에서 기술된 내용(촌락공동체부재론)으로 보인다.

23) 강성복, 『용화리의 역사와 민속』(금산문화원, 1992), 99~100면.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5.132.14.104 at Wednesday, September 21, 2022 5:55 PM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5.132.14.104 at Wednesday, September 21, 2022 5:55 PM

시대에는 생산력 수준이 낮기 때문에 공동체의 존재 자체가 생산양식이라는 발상이 생겼고, 맑스는 그 역사적 발전단계를 진화론적으로 파악하여 아시아적 공동체 ⇨ 고전・고대적 공동체 ⇨ 봉건적 공동체(혹은 게르만적 공동체 = 촌락공동체)의 순서로 진화된다고 생각하였다. 봉건적 공동체에서는 생산력을 보다 제고시키려는 방편으로 촌락 성원의 개인적 욕심을 억제하고 촌락민 전체를 위한 규율에 순응하게 하는 메카니즘의 기획과 실천이 탄생하였다. 촌락민이 제정한 규율에 촌락민이 순응하는 모습을 오오츠카 히사오(大塚久雄)의 용어법을 빌려 '공동태적 규제'[24]로 부르기로 하자.

유럽 중세의 촌락공동체(village community 혹은 village commune 혹은 Dorfgemeinde)에서의 공동태적 규율의 예로는 개방경지제(open field system)와 삼포식 농업(The three crop rotation system, Dreifelderwirtschaft), 경구제(耕區制, Gewannsystem), 지조(地条, Streife)제, 휴한지(fallow)에의 가축 방목의 허용, 목초지와 산림의 남용 억제(가축의 수량 제한 등)를 위한 각종의 촌법(village regulations, village bylaws)의 운용 등을 들 수 있다. 유럽 중세의 촌락민 중 자유민(free holder, copyholder)과 농노(villein 혹은 serf)는 촌락의 구성원으로서 촌락의 경지 등을 특정 구획으로 소유・이용한 것이 아니라 전체 경구와 지조, 공용지에 대한 지분(share)으로 소유・이용[25]하였으므로 촌락민들 사이의 연대감(solidarity)과 단일성(unity) 의식은 매우 단단한 것이었을 것이다. 유럽 중세의 촌락민들의 결합관계를 공동체(community, commune, Gemeinde)로 표현한 학자들의 의도는 촌락민들 상호간의 일체성과 그 결합의식이 매우 강고함(cohesion)을 비유적・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데 있다.

근세 조선의 통상적인 촌락 농민들은 농경지에 대하여 경계가 확실히 그어진 토지를 개별적으로 소유하면서 개별적으로 경작하였고, 예외가 없지 않지만 산림(山林)과 천택(川澤)까지도 경계를 명시하여 사점[私占, 예를 들어 임야는 사양산(私養山)]하는 사례와 관행을 발전시켜 왔으며, 미역바위 채취 어민 등을 제외하면 통상적인 농민들이 경지를 유럽 중세의 촌락처럼 지분(share, Teil)으로 '공동소유・공동이용'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영훈의 논문에서는 근세 조선의 촌락이 [요건4]를 충족한다든가 미충족한다는 논평을 찾아볼 수 없다. 이영훈이 제시하는 [요건4]는 '촌락토지의 공동소유・공동이용'보다는 현저히 완화되어 있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지

24) 大塚久雄, 『共同體の基礎理論(29刷)』(1978, 岩波書店)[이하 이 책은 '大塚(1978)'로 약칭한다.], 42~46면.
25) 大塚(1978), 81~108면.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5.132.14.104 at Wednesday, September 21, 2022 5:55 PM

만 이 점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없어서 그의 진심이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다. 이영훈의 공동체 부재론의 명시적 논거는 오히려 다른 요건들의 미충족・부재에 있다.

3. 촌락의 독자적인 법인격([요건3])

이영훈이 제시하는 [요건3]의 내용이 무엇인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음의 추가적인 설명이 약간의 힌트를 준다.

> "상대적으로 평등한 자격의 성원들이 강한 귀속 의식을 공유하는 대상으로서 하나의 인격으로 승화된 공동체를 거기서(대저리에서 : 필자) 발견할 수는 없다. 19세기의 대저리를 두고 역사적 실체로서 공동체로 규정함은 무리이며, 이 점은 다른 수많은 동리도 마찬가지이다."[26)]

첫째, 이영훈이 언급하는 "하나의 인격으로 승화된 공동체"를 선의(善意)로 해석하면 중세 유럽의 촌락이 촌락의 이름으로 각종의 법률행위를 하고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등장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법이 아닐까 추측된다. 예를 들어 중세 유럽의 사료(史料, 주로 장원재판소의 재판기록들인 manor court rolls)에는 촌락 전체(village as a whole)가 장원 영주(a lord)의 차지인(a collective tenancy)이 된다든가, 촌락민의 규칙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촌락이 국왕이나 장원 영주로부터 벌금(fine)을 부과받는 실체(entity)로 기록되는 현상이 자주 등장한다. 촌락연구자들은 사료에 나타나는 이 현상을 보고 촌락이 촌락 내에 거주하는 촌락민과 구별되는 별도의 인격(personality)이라고 파악한 것이다. 사료상 드러나는 이 현상을 보고 중세 영국의 촌락사 전문가 크리스토퍼 다이어는 수많은 증거를 들어 사례를 제시한 후 "촌락공동체(village community)는 실재(real)하는 현실적 존재(a practical existence)였다. 촌락(vill)은 고유한 내적 위계(an internal hierarchy)를 가지고 있었고 자치(a self regulation)를 수행하였다. 영주와 국왕은 촌락의 (자생적) 운영기구를 활용하였을 뿐"[27)]이라고 썼고, 또 다른 중세 영국의 촌락사 전문가 워렌 올트는 상징적으로 "촌락(vill)은 촌락의 이름으로 제소할 수도 있고 제소당할 수도 있다(vills could sue and be sued)."[28)]고 기술(記

---

26) 이영훈(2001), 282면.

27) Christopher Dyer. "The English Medieval Village Community and Its Decline", in *Journal of British Studies*, Oct., 1994, Vol. 33, No. 4, Vill, Guild, and Gentry: Forces of Community in Later Medieval England (Oct., 1994), pp.407-429, 특히 p.418.

28) Warren O. Ault, "The Vill in Medieval England" in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述)하였다. 다이어는 다시 중세 영국의 촌락이 법적 인격을 가질 정도로 매우 의미 있는 사회적 실체(social entity)였다고 자리매김하였다.[29)]

토쿠가와[德川] 시대의 일본 근세 촌락도 재산을 소유하고, 재산을 매입하고 매각하기도 하고, 금전을 빌리기도 하고 제소하기도 하고 제소당하기도 하였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일본의 촌락사 연구자들은 당시의 일본 촌락이 법적 실체(a legal entity), 단체적 실체(a corporate body)였다[30)]고 자리매김하였다.

이영훈은 근세 조선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가 검출되지 않는다고 본 것 같다. 그러나 이영훈이 기술하는 저곡리(행정동리) 동계는 "제반 공공업무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동답(洞畓)을 소유"하였고, 그로부터의 "수입과 지출 사항은 담당 유사(有司)가 '동계하기(洞稧下記)'로 꼼꼼히 기록하여 매년 12월 하순에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동회(洞會)에 보고"하였고, "유사(有司)는 1년을 임기로 교체됨이 원칙"이었다. 사정이 이렇다면 저곡리 동계는 단체로서 움직인 것이고, 근세적 법인격을 가진 것으로 보기에 손색이 없다. 아마도 이영훈은 주민 중의 일부만이 계원(契員)으로 선택적으로 가입한 동계는 확인되지만 '주민을 성원으로 구성되는 동리의 법인격'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인다. 과연 그럴까?

1599년(선조32), 양좌동 주민들은 경주 관아에 마을 앞에 물길을 내어 자기 마을의 토지를 개간하려고 하는 이웃 마을 품관의 기도를 저지하기 위하여 '安康縣良佐洞居民等狀'을 올렸다. 양좌동이라는 촌락이 소송행위의 주체로 나선 사례이고 경주부윤은 "바로 이 소장을 가지고 당장 이군옥 등에게 분부하여 일을 정지하게 할 것이니 너희들은 모두 안심하고 물러가라"고 응답[31)]하였다.

4. 다산 정약용이 제시하는 사례와 이정법(里定法)

정약용은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군첨(軍簽) 관계의 이슈로 두 마을이 서로 다투는 사례를 기록[32)]하고 있다. 이 분쟁의 당사자는 이(里)(동산리와 남천리)였다. 이

Jun. 8, 1982, Vol. 126, No. 3 (Jun. 8, 1982), pp.188-211, 특히 pp.191~192.

29) Christopher Dyer, "Chapter 1. Power and Conflict in the Medieval English Village" in *Everyday Life in Medieval England* (Bloomsbury Academic, 2000).

30) Harumi Befu, "Village Autonomy and Articulation with the State: The Case of Tokugawa Japan" in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Nov., 1965, Vol. 25, No. 1 (Nov., 1965), p.26.

31) 김현영, "조선 중후기 경주 양좌동의 촌락 조직과 그 성격", 『영남학』 17권, 2010[이하 이 논문은 '김현영(2010)'으로 인용함], 392~396면.

32) 『牧民心書』刑典六條【聽訟・斷獄・愼刑・恤囚・禁暴・除害】○ 聽訟下 "군첨에 관한 송사로 두 마을이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5.132.14.104 at Wednesday, September 21, 2022 5:55 PM

분쟁의 과정에서 다짐[侤音]하는 자는 이(里)의 두민(頭民)이었고 결국 패소하여 태(笞)를 맞는 자도 이(里)의 두민이었다. 법인격은 이(里)에 있지만 패소[理曲]하여 형벌을 받는 사람은 이(里)의 두민이었다. 이 문맥에서 이(里)가 단체(a corporate body, Verband)였고, 두민은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형벌을 받은 것이다.[33] 김인걸은 "동계를 관(官)의 통제하에 두려고 했던 것이 이른바 숙종 37년의 양역변통절목에 포함된 이정법(里定法) 체제"[34]라고 파악한다. 이정법은 양역에 응하는 군정의 수는 국가(중앙정부-도-군)가 정하고 구체적으로 응하여야 할 군정은 동리가 정하게 한다는 발상이다. 동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발상이다. 이정법의 발상은 군첨이 아닌 다른 영역으로도 끊임없이 확산되는 추세[35]에 있었다.

통감부 시기부터 조사되기 시작한 조선관습조사보고서류에서도 동리(洞里)의 법인격의 존부가 문제되었는데 법인격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 하나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이(里)는 재산을 소유하고 재판상 및 재판외에서 독립한 단체로 인정될 수 있다.
> 2. 이는 그 명의로 소송을 하는 관습이 있다.
> 3. 이가 소송하는 경우에 대표자는 이장(里長)이 되는 수가 있고, 이장 및 두민(頭民)이 되는 수가 있고 혹은 이민 중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가 되는 수도 있다. 종전에는 등소(等訴)로 칭하여 이민 다수가 연명(聯名)하여 하는 일이 많았던 것 같다. 대표자를 정할 때에는 이민의 협의를 경유한다. 위의 사항은 현재 아직 조사중에 있다."[36]

요컨대 근세 조선에서는 이영훈이 말하는 동리(洞里)뿐만 아니라 동계, 서원(書院),

서로 다툴 때에는 그 근맥(根脈)을 상고하여 확실하게 어느 한쪽으로 귀결지어야 한다(軍簽之訟 兩里相爭 考其根脈 確然歸一) … 양편으로 하여금 각기 전후 서류를 하나도 빠짐없이 가지고 오게 하여 양편이 나와 대변(對辨)하게 한다. … 수령이 스스로 입안(立案)을 작성한다."

33) "지금 관정(官庭)에서 벌주기로 판결하여 태(笞) 20을 때리니 그제서야 전후에 마주 송사했던 문권을 가지고 불태워 없애기를 진정으로 원하며 다시는 송사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동산리 두민 이태운 등이 죄상을 승복한 고음에 의거하여 이와 같이 입안하니 영구히 증거로 삼아 다시는 부당하게 서로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34) 김인걸, "조선후기 향촌사회통제책의 위기", 『진단학보』 제58호(1984)[이하 이 논문은 '김인걸(1984)'로 인용함], 122면.

35) 손병규, "조선후기 비총제(比摠制) 재정의 비교사적 검토", 『역사와 현실』 81(2011), 213~250면.

36) "(23) 이(里)의 소송능력에 관한 건"(1911년 1월 11일자 함흥지방재판소 민사부 재판장 조회(照會)에 대한 같은 해 3월 9일자 취조국 장관 회답), 朝鮮總督府 中樞院, 『民事慣習回答彙集(1933)』, 43~44면. 25~26면에도 같은 취지의 회답이 있고 이들 내용은 朝鮮總督府 中樞院, 『관습조사보고서(1912)』, 35~36면에 수록되었다.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5.132.14.104 at Wednesday, September 21, 2022 5:55 PM

향교(鄕校) 등에도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었다. 이 쟁점에 대한 논의는 뒤에 다시 상론하겠다.

5. 조선시대 촌락이 자치를 수행하였다는 증거들

앞에서 인용한 아다치는 일본의 무라가 '작은 국가'였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이 표현은 영주나 국가권력이 행사하여야 할 권력의 일부를 촌락이 행사하였다는 비유이고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를 자치(自治, a self governance, an internal control)라고 부른다. 논자에 따라서는 이를 자율(autonomy)로 지칭하기도 한다. 몇몇 연구자들은 이영훈의 '자치' 용어 사용법을 답습하고 있는데 이 용어법은 시정될 필요가 있다.

촌락이 영주나 국가권력이 행사하여야 할 영역에 관한 규약을 제정하거나 경찰권, 형벌권, 재판권을 행사할 때 자치권을 행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촌락이나 동계가 "수리(水利), 공동노동, 영림(營林) 등"을 수행하는 것을 가지고 자치권을 행사한다고 말하는 것[37]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근세 조선의 촌락이 일정한 자치(自治)를 수행한 적이 있었는가, 있다면 어떤 자치를 수행하였는가 하는 점의 규명에 있다.

이영훈은 대저리 동계에 관하여 "1843년 연말의 정기 동회(洞會)에서 하리(下里)의 모(某) 상민(常民)을 매질하였는데, 소나무를 베었다는 이유에서였다(1843.12). 이렇게 동회는 필요에 따라 하민을 징벌하는 재판정(裁判廷)이기도 하였다."[38]고 적었다. 그런데 이 사실은 그의 논지(촌락공동체 부재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실이다. 동(洞)의 규약을 위반(부당하게 소나무를 베었다)하였음을 이유로 동민을 매질하는 사례는 이른바 공동태적 규제의 형식으로 대저리가 일정한 형벌권을 행사하는 사례이다. 혹시 이영훈은 이 사례에서 형벌권을 행사한 주체는 '주민으로 구성된 대저리'가 아니라 '대저리 동계'였으므로 주민으로 구성된 대저리가 자치권을 행사한 사례가 아니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대저리 동계가 매질을 했다면 사료에서 동계(洞契)나 계회(契會)에서 처벌하였다고 표현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사료에서 '동회(洞會)에서 매질을 집행'한 것으로 표현되었다면 그 동회는 이영훈이 상상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대저리 동회'인 것이다.

---

37) 이영훈(2001), 245면.
38) 이영훈(2001), 273면.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5.132.14.104 at Wednesday, September 21, 2022 5:55 PM

또 하나의 중요한 증거를 추가로 언급하겠다. 근세 조선의 촌락에서는 촌락이 설정한 규범(입약 혹은 약조)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출동(黜洞)시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1614년에 작성된 구림 대동계(鳩林大同契)의 완의(完議) 제10조는 ‘유죄출동(有罪黜洞)’이라는 제목으로 “洞中之人 或於父子叔姪兄弟朋儕鄰里間 如有悖惡不道之事 則一切擯斥 使不得共參約會 下人則論罪嚴治事”[39]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료에서 동중(洞中)이란 구림동 동계원 뿐만 아니라 구림리에 거주하는 사람 모두를 의미한다[40]는 해석이 있다. 이 외에도 출동사례는 지속적으로 보고[41]되고 있다. 출동이란 문자 그대로 물리적으로 동네 밖으로 내쫓는 것이라는 견해[42]도 있고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견해[43]도 있지만 어쨌든 어느 지역 집단[洞里]이 용납할 수 없는 비행(非行, wrong-doing)이 적발된 경우에 그 위반자에 대하여 가하는 가장 강력한 제재조치(sanction)가 출동이다. 구림 대동계의 약조(約條)에는 비행(非行)에 대하여 태(笞) 20, 태 30을 시벌(施罰)하는 규약도 있다.[44] 그런데 이영훈이 생각하는 문제틀(framework)의 입장에서는 출동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는 주체가 ‘구림에 사는 주민으로 구성되는 구림동’이 아니라 주민 중 일부만이 가입된 동계라는 점이 의아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동계는 민간에서 설립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국가측 기록에는 계의 설립을 ‘사적으로 약조를 만든다(私立約條)’[45]고 기재하였다. 사적으로 만든 것이므로 “강한 자는 그 약조를 깔보고 악한 자는 그 약조를 무너뜨리는” 수가 있다. 당연히 동계를

---

39) 靈巖郡, 『鳩林大洞契舍復元推進委員會 鳩林大洞契誌(2004)』, 106면.
40) 김혁, “18~19세기 鄕約의 실천과 사회관계의 변화”, 『한국문화』66(2014), 283면. 이해준(1996), 210면, 각주 90)도 출계(黜契)와 출동(黜洞)을 구분한다.
41)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요선계, 『邀僊稧文籍探究(2012)[이하 이 책은 ‘요선계문적탐구(2012)’로 인용함], 22면. 김인걸에 의하면 거의 모든 동계의 규약에 출동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한다. 김인걸(1984), 104면.
42) 심재우, “조선 시대 훼가출향(毁家黜鄕)의 성격과 전개 양상” 『한국학(구정신문화연구)』, 43(4) (2020). 심재우가 직접 언급한 것은 출동이 아니라 출향(黜鄕)이지만 출동에 대하여도 같은 논의를 할 수 있다.
43) 박현순, “조선시기 鄕罰의 내용과 추이”, 『국사관논총』 103집(2008) 박현순이 언급한 것은 출향(黜鄕)이다. ; 김필동(2002), 39면.
44) 약조 위반에 대하여 벌칙을 가하는 사례는 매우 많다. 박현순, “17~18세기 향약의 班常間 부조에 대한 고찰”, 『朝鮮時代史學報』82(2017), 204면.
45) “且我國之俗 內自都下 外暨鄕曲 皆有洞隣之契 香徒之會 私立約條 欲相檢攝 而第以各從己意 粗率無章 不足爲綱紀而藉賴 又其約束不出於朝廷 而私自造立 故强者侮之 惡者壞之 終不能糾正”[선조실록, 선조 6년(1573) 8월 17일]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5.132.14.104 at Wednesday, September 21, 2022 5:55 PM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5.132.14.104 at Wednesday, September 21, 2022 5:55 PM

조직한 사람들 사이에 동계의 약조의 집행력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었을 것이다. 이리하여 동계의 약조를 수령에게 제출하여 국가적 승인을 얻으려는 시도가 자주 행하여졌다.[46] 촌락이 신청하여 수령이 승인한 동계의 약조는 이제 사설 약조가 아니라 국가가 국가권력의 일부를 동계・동리에 정식으로 승인・추인한 것이므로 이 경우의 동계・동리는 아다치가 말하는 '작은 국가'의 기능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출동은 일본 근세의 '무라하치부(村八分)'에 상당하는 조치로서, 근세 조선의 촌락이 행사한 처벌사례이다. 동계 자료에는 출동(a village ostracism) 이외에도 다수의 촌규약(village codes, village bylaw)과 그 위반행위자를 처벌하는 사례들이 등장하여 향후 그 방면에 대한 치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박현순과 심재우의 논문이 있지만 그들의 주제는 출동이 아니라 출향(黜鄕)이었다. 물론 향(鄕)과 동(洞)이 전혀 관계없는 실체는 아닐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증거를 추가로 언급하겠다. 경상도 상주(尙州) 청남면 덕산에 거주하는 양녀(良女) 손악지(孫惡只)의 아버지 손순문(孫順文)은 자신의 딸이 시아버지 김태회(金太回)에게 당한 피해 상황을 시아버지가 거주하는 동오리(桐梧里) 동중(洞中)에 투서하였다. 김태회는 며느리 손악지가 가난하고 병든 남편과 시댁에 불만을 품고 다른 곳에 시집가기 위해서 자신이 며느리를 강간하려 했다고 거짓 고소했다고 항변하였다. 손순문은 동오리 동중에 투서(投書)하면서 "김태회가 대낮에 며느리인 자신의 딸 손악지를 강간하려다 실패하자 며느리를 소박했는데도 이런 자를 왜 '훼가출동(毁家出洞)'하지 않느냐고 주장하였다. 손순문의 행위는 동(洞)에 일정한 경찰권과 사법권이 있음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해될 수 없는 행위이다. 손순문이 투서한 이후 동중(洞中)에서 손순문을 불러 그 곡절을 물었다.[47][48] 위와 같은 동중의 조치도 동(洞)에 일정한 경찰권과 사법권이 있음[49]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해될 수 없는 행위이다. 김선경이 전하는 촌락문서에는 수령이 "사소한 쟁송은 해당 동리의 존위와 노

---

46) 정극인(丁克仁) 저; 안태석, 안진회 번역, 『(국역) 古縣鄕約』(정읍문화원, 2011), 제21 古縣鄕約案 209~229면에는 총 60개소에 관인(官印)이 찍혀 있고 원문 영인본 229면에는 고현 수령의 화압(花押)이 찍혀 있다. 수령의 제사는 "凡此所約乃所以正名分厚風俗 其意非偶然 約因是文 以强凌弱反病小民 則誠不幸 各別惕念勉戒哉"였다. ; 제25 完文(253~258면); 동학당전답안(298~293면)에도 관인과 수령의 화압이 있다. '古縣鄕約案'이라는 명칭이 부여되어 있지만 내용상 고현동약이다.

47) 商山錄, 孫惡只獄案(『한국지방사자료총서: 보첩편3』(여강출판사, 1987), 289~356면.

48) 심재우, "조선시대 훼가출향(毁家黜鄕)의 성격과 전개 양상", 한국학』2020 겨울, 29~30면에서도 이 사안을 언급하고 있다.

49) 김인걸(1984), 122면.

인이 먼저 곡직을 가려 비리로 제소를 남발하지 못하게 하라(些少爭訟之事 該洞尊位與老成人 先卞曲直 無使非理健訟)"[50]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

거제도 항리의 신묘년(1891) 완의에도 동중완의를 위반하는 자를 '훼가출송(毁家出送)'하는 취지를 영구준행(永久遵行)하겠다[51]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

6. 구성원들 사이의 평등성 ([요건1])

이영훈은 이 요건을 앞에서는 "구성원 상호 간에 권리 의무의 일정한 차별은 있어도 일방이 타방의 인신을 신분적으로 지배하는 일은 배제될 것"[52]으로 표현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평등한 자격의 성원들"[53]이라고 표현하였다.

'구성원들 사이의 평등성'이라는 발상은 공동체에 관한 막스 베버의 언급(Gleichheit[54])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16・17세기부터 조선에서 발견되는 상하합계(上下合契) 형태의 동계에서 양반 주가(主家)와 그 양반가에 인신적으로 예속되는 노비 가족이 같은 동계의 구성원이 되는 모습은 평등한 구성원들의 단체・집단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논증이 이영훈의 발상이다.

중세 유럽의 촌락이나 근세 일본의 촌락의 구성원 중 일방이 타방의 인신을 신분적으로 지배하는 일은 없었어도 촌락민 사이에 계급(class), 계층(status) 간의 틈이 생기고 그로부터 첨예한 갈등과 대립은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또 이론가(예를 들어 막스 베버)의 머리속에서 형성된 추상적 원리와 현실 사회에서 생성되는 경험적 데이터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영국 중세 초기의 촌락에는 정식 주민(villani proper) 외에 오두막 농민(cottier), 노예(slave)가 공존하였다.[55] 크리스토퍼 다이어는 중세 후기 잉글랜드 지역의 촌락공동체(village community)가 "평등한 사람들의 연합체(an affiliation)였던 적이 없었다."[56]고 말한다. 일본 근세의 무라오키데[村掟 : 근세 조선의 입규에 상당한 실체이

---

50) 김선경, "조선후기 조세수취와 면리 운영"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66면에서 재인용함. 그런데 김선경이 출처로 적시한《牒移》에서 '重岩一洞에 대한 下帖'은 찾을 수 없다. 출처 표시에 착오가 있는 것같다.

51) 전민영, "19세기 巨濟 舊助羅里 마을고문서와 공동생활 방식 -旅客主人・漁條를 둘러싼 문제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제51호(2017)[이하 이 논문은 '전민영(2017)'로 인용함.], 252면.

52) 이영훈(2001), 249면.

53) 이영훈(2001), 282면.

54) 大塚(1978), 44면.

55) Frederic Seebohm, *The English Village Community* (LONGMANS, GREEN, & CO., 1905.), p.105.

56) Christopher Dyer(1994), p.429.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5.132.14.104 at Wednesday, September 21, 2022 5:55 PM

다]에는 낮은 지위의 농민들을 억제하고 촌락의 엘리트 그룹을 보호하는 규정이 발견되고 있고, 또 그룹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낮은 지위의 농민들을 그르다(wrong)고 판정하도록 유도하는 불평등한 규정도 발견된다.57) 허만 옴스는 근세 일본의 촌락은 "자율적이고, 조화롭고, 평등주의적인 사회가 아니었다(villages no longer resemble autonomous, harmonious, egalitarian communities)."58)고 진단하였다. 허만 옴스는 공동체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는 데도 동의하지 않는다.

반면 2015년에 정진영은 "신분제적 지배란 사실상 농민의 경제적인 안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이룰 수 없는 이상일 뿐"이었고 "농민의 생존을 위협한 것은 신분이 아니라 늘 경제"59)였다고 썼다. 그는 또 2018년에 18세기 경주최씨가 일기를 분석하여 "앙역노비들의 신역(身役)은 무한정으로 착취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헌신과 복종, 또는 노동력 제공에 대한 보답이 뒤따라야 했다. 월료(月料)가 지급되었고, 과외의 활동이나 성과에 대해서도 특별한 보상이 주어졌다. 무엇보다도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했다. 이러한 사정에서 노비와 상전가와의 관계는 불완전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호보험적 또는 상호호혜적인 관계였다"60)고 파악하였다. 양반 주가와 그 양반가에 인신적으로 예속되는 노비 가족이 같은 동계의 구성원이 되는 모습을 근세 조선형 단체・집단의 특성・변형으로 보면 몰라도 촌락공동체성(동계를 촌락공동체로 보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을 부정하는 요소로 볼 일은 아니다.

근세 조선의 촌락공동체성을 논할 때 '중세 유럽형'과 '근세 일본형'을 비교대상으로 설정하는 발상은 유익한 일이지만 중세 유럽형과 근세 일본형을 소재로 일정한 요건을 추상적으로 뽑아낸 후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촌락공동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발상은 공정한 발상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영훈의 [요건1]은 어느 특정 사례(중세 유럽형 촌락이나 근세 일본형 촌락)를 기준으로 요건을 뽑은 다음 그 요건에 합치하는 사례가 보이지 않으므로 '검출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격이다. 더구나 비교 대상이 중세 유럽형 촌락인지 근세 일본형 촌락인지도 명시되지 않아 적절한 논평이 매우 어렵다.

많은 연구자들의 분석대상이 되고 있는 거제 항리(구조라리)를 보자. 항리의 주민

---

57) Harumi Befu, 앞의 논문(1965), p.29.

58) Herman Ooms, *Tokugawa Village Practice: Class, Status, Power, Law*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p.242

59) 정진영, "사족과 농민-대립과 갈등, 그리고 상호의존적 호혜관계", 『조선시대사학보』 73, 2015, 154면.

60) 정진영, 18세기 일기자료를 통해 본 사노비의 존재형태-백불암 최흥원의 ≪曆中日記≫(1735~1786)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53, 2018. 국문요약 부분.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5.132.14.104 at Wednesday, September 21, 2022 5:55 PM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5.132.14.104 at Wednesday, September 21, 2022 5:55 PM

들 사이에는 양반과 평・천민과 같은 신분상의 갈등이 존재하지 않았다. 항리는 민촌(民村) 동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1863년 당시 거제도의 항리(項里)는 남자 141명, 여자 106명 총 247명이 거주하는 어촌이었다. 동리민중 유학(幼學)과 충의위(忠義衛)를 칭하는 양반층도 일부 보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은 평민이었다.[61] 항리는 다른 마을들과 산을 공유하였고, 여객주인(旅客主人)과 어조(漁條)를 공동소유하는 등 이영훈이 제시하는 촌락공동체의 요건을 거의 구비한 마을이다.[62] 항리 촌락문서에는 계(契)란 용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지만 19세기 중후반의 항리는 이영훈이 제시한 촌락공동체의 거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었다. 거제부 항리 촌락문서 영인본은 이영훈이 2001년에 논문을 공간(公刊)하기 2년 전에 공간된 바 있다.

7. 가입・탈퇴의 선택불가능성 ([요건2])

이영훈이 이 요건을 공동체의 요건으로 제시한 후 김필동도 이 발상을 수용하였다. 김필동이 제안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7요건에서는 무려 2개[63]가 이 요건과 관련이 있다. '자발적 가입의사'를 문제삼는 것으로 보아 이 요건은 근세 조선의 계, 특히 동계를 의식하여 제시된 요건으로 보인다. 근세 조선의 계・동계에서는 가입과 탈퇴가 비교적 각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64] 이영훈과 김필동

61) 정순우・안승준, "거제도 구조라리 고문서와 그 성격",『고문서집성』35, 해제(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이하 이 논문은 '정순우・안승준(1998)'로 약칭함]; 송양섭, "19세기~20세기 초 巨濟 舊助羅里의 洞中과 洞錢의 운영",『한국문화』94(2021), 393면.

62) 18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의 항리(구조라리)의 주민들이 공동소유・공동이용하는 공동재산은 여객주인(旅客主人)과 어조(漁條)였다. 여객주인은 여객에 대한 주인(主人)으로서 여객이 위탁하는 상품의 매매 등을 수행하는 존재였다. 동리(洞里)로서의 항리는 동리의 대표인 존위와 공사원에게 여객주인의 역할을 일임하는 동시에 관원이 행차할 때 접대를 수행하는 역 등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여객주인의 역할은 권리이자 의무였다. 다음에 어조는 물고기가 다니는 길에 배를 세워 두고서 망(網)을 설치해 놓고 물고기를 잡는 설비였다. 항리에는 13곳의 어조가 있었는데 이것도 항리의 공동재산에 속했다. 여객주인과 어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동리에서 자체적으로 합의하고 합의가 형성되면 완의(촌락규범)를 작성한 다음 관에 제출하여 인증을 받았다. 항리는 반촌이라기보다는 전형적인 민촌에 속한다. 전민영, "19세기 巨濟 舊助羅里 마을고문서와 공동생활 방식 -旅客主人・漁條를 둘러싼 문제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제51호(2017), 237면. 여객주인과 어조는 통상의 산림・천택과 이질적인 것이지만 필자는 항리를 근세조선적 유형의 촌락공동체로 자리매김하는 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63) "1) 공동체는 그 기원에 있어 자연발생적이고 자라나는 것이다. 이 관점은 공동체는 의도적・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공동체의 '자연발생설') … 3) 공동체에의 참여는 선택적이거나 노력과 실력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출생과 더불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무의식적이고 다소 우연적인 귀속(ascription)에 의해 이루어진다." 김필동(2002), 19면.

64) 그러나 관내에 있는 전원을 동계에 가입시키려는 시도가 없지 않았다. "洞內上下人皆入約中 其或有不肯隨參者 諄諄曉諭隨參", 김인걸, "조선후기 향촌사회통제책의 위기",『진단학보』제58호(1984)[이하

은 공동체가 되려면 통상의 계・동계와 달리 개인에게 자발적 가입의사가 없더라도 생득적인 계기나 그에 상응하는 계기로 구성원이 되어야 하고 가입에 진입장벽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 "이상과 같은 운영 양태의 동계가 양반 신분의 연대(連帶)로서 상민(常民) 신분의 동리민을 차별하고 지배하는 구조를 지녔음은 **동계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의 제한**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1871년 12월 13일 득녕의 일기에는 '진사가 동안(洞案)에 가입할 차로 술과 음식을 갖추어 동원(洞員)을 모았다'라고 적혀 있다. … 이처럼 동계에 가입함은 곧 동안(洞案)에 그 이름이 등록됨을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 형식의 통과의례와 기존 성원으로부터의 동의가 필요하였다. 가입을 승인받은 신입자는 일정액의 명전(名錢)을 가입금으로 납부하였다. … 생득적으로 양반신분에 속한다 해서 모두가 동계의 성원으로 가입한 것은 아니다. … 단자(單子)를 혼자 힘으로 작성할 정도의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가입은 불가능하였다."[65]

그러나 이영훈이 제시하는 대저리 동계의 사례와 상반되는 사례(아래 인용문의 ②)가 있다. 1911년 4월 22일자 해주(海州) 구재판소(區裁判所) 조회(照會)에 대한 같은 해 5월 12일자 조선총독부 취조국 장관의 회답을 보자.

> "① 조선에서 보통으로 보이는 동계는 동민(洞民)의 협의(協議)로 동내(洞內) 각호(各戶)로부터 균일하게 혹은 등급을 달리하여 금전・미곡류를 갹집(醵集)하고 이를 대부(貸付) 혹은 전답을 구입하여 그 수익으로 동내 각호의 호포세(戶布稅)에 충당하고 혹은 교량, 도로의 수축비, 기타 동내 공공비용 등에 충당하므로 그 재산은 동유(洞有)에 속하는 것이다.
> ② **새로 그 동내에 이주하여 1호(戶)를 구성한 자는 당연히 계원이 됨과 동시에 입동(入洞)한 때 및 정시에 그 부담을 분담한다. 또 동외에 주거를 이전한 자는 당연히 계원인 자격을 상실하고 동시에 그 부담을 면하게 된다. 그러나 종래 지출한 부담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 ③ 계원인 호주가 사망하는 경우에 상속인이 당연히 계원의 지위를 승계하지만 지분과 같은 관념을 없다. 호주의 지위를 상속하는 것에 의하여 당연히 계원의 자격을 승계하는 것이다.
> ④ 동민의 일부가 조직한 동계는 종래의 조사에서는 아직 적절한 사례에 접하지 못했다. 그리고 동내에 있는 호(戶)중 빈궁한 자에 대하여 특히 그 부담을 면해주는

이 논문은 김인걸(1984)로 인용함], 101면 각주 15)에서 재인용함.

65) 이영훈(2001), 271~272면.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5.132.14.104 at Wednesday, September 21, 2022 5:55 PM

예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에 부담을 면해 줄 따름이지 이를 동계 밖의 호(戶)로 보지 않는다. 만약 또는 실제로 동민의 일부만으로 조직되는 계가 있다면 설사 그를 동계로 칭하는 경우에도 그 성질은 조합(組合) 또는 공유(共有)에 속하는 계이지 동계가 아니다. 다만 해주지방에 있는 동계에 대하여는 아직 충분히 조사를 수행하지 못했다.”[66]

일본인 조사 당국의 질문사항에 대한 조선인 응답자들은 이영훈이 상상하는 ‘주민 모두가 구성원이 되는 동리(洞里)’와 동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한편 ‘새로 이주한 가구가 있으면 그 가구는 이주와 동시에 계원이 되고 전출하면 전출과 동시에 계원자격을 상실한다.’고 답변(②)하였다. 1900년대 조선의 상황은 주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동리와 동계는 구분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67] 중요한 사실은 1900년대 조선의 상황은 적어도 일부는 이영훈이 상상하는 ‘주민 모두가 구성원이 되는 동리(洞里)・동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유럽 중세의 촌락에서 주민 모두가 촌락구성원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었다. 1281년 롬슬리(Romseley) 빌리지는 어느 주민에게 공동목초지의 이용을 거부하였는데 빌리지는 ‘그는 공동체의 멤버도 아니고 토지보유자도 아님’을 근거로 삼았다.[68] 이 문제에 대하여는 이 논문의 ‘Ⅷ. 결어 : 조선 촌락사 연구 수준 제고를 위한 제언 1. 촌락 구성원 자격의 부여를 위한 신입례의 존부’ 부분에서 재론하겠다.

8. ‘커뮤니티와 어소시에이션’을 대조적으로 활용하는 담론의 불모성

이영훈은 “동계(洞契)는 … 하나의 결사체였다. 자발적인 결사인 만큼 성원 간에 알력이 생기고 연대가 철회되면 그것은 해체되었다.”고 하면서 동계를 공동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논증에 대하여는 다음의 3가지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영훈은 어떤 경우에는 동계를 분석대상으로 삼고, 어떤 경우에는 동리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근세 조선의 동계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이어서 (촌락공동체로서의 요건을 구비한) 동리도 검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영훈의 논문

---

66) 朝鮮總督府 中樞院, 『民事慣習回答彙集(1933)』, 50~53면.

67) “계장은 대개 동장에 해당하는 존위, 집강 등이 겸하여 이를 맡아 행하는 것이 보통이며, 계의 소임은 동임이 맡거나 혹은 계원 중 상당한 자산과 신용이 있는 사람 가운데 계원이 이를 뽑기도 한다.” 김경일, “조선말에서 일제하의 농촌사회의 동계(洞契)에 관한 연구”, 『한국학보』 10권 2호(1984), 170면.

68) Zvi Razi, “FAMILY, LAND AND THE VILLAGE COMMUNITY IN LATER MEDIEVAL ENGLAND”, in *Past & Present*, Volume 93, Issue 1, November 1981, p.13.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5.132.14.104 at Wednesday, September 21, 2022 5:55 PM

을 여러 번 통독하면 이영훈의 궁극적인 분석대상은 동계가 아니라 (주민 모두로 구성되는) 동리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영훈은 왜 동계 기타의 계를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정교하게 분석할까?

이영훈의 입장에서는 '주민 모두가 구성원이 되는 동리(그리고 그 동리는 포괄적인 공동업무를 취급하여야 한다.)'의 부존재를 입증하면 된다. 그러나 한국에는 이른바 동계를 촌락공동체로 설정하는 연구자들이 있으니 그 연구자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근세 조선의 동계도 촌락공동체가 아님을 논증하려는 것 같다.

둘째, 이영훈이 생각하는 '주민 모두가 구성원이 되는 동리(洞里)'라는 발상과 비슷한 발상을 영국 중세의 경제사가인 포스탄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포스탄은 영국 중세의 'Vill'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전형적 촌락의 주민들은 촌락공동체를 구성하여 집단적으로 운영하였고 공식적 비공식적 기구, 법정, 회의체, 기금과 길드를 가동하였다. 이들은 농가의 규율을 만들고 집행하였으며, 토지보유와 상속에 관한 지역적 관습을 감시하였고 지역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였다."[69)]

포스탄의 "촌락의 주민들(inhabitants, residents)이 촌락공동체를 구성하여 집단적으로 … 운영하였다."는 기술과 이영훈의 '주민 모두가 구성원이 되는 동리(洞里)'라는 기술이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포스탄은 자신의 기술(記述)이 '이념형적인 추상'(ideal abstraction)[70)]이라고 말한다. 중세 유럽의 촌락을 연구하는 학자가 촌락에 관한 이념형적인 추상을 제시한 데 불과하였는데 그 추상을 따다가 근세 조선에서 촌락공동체를 검출하기 위한 요건으로 제시한다면 그 발상은 적절하지 않다. 포스탄은 엄밀하게 '주민 모두가 구성원이 되는 촌락'을 염두에 두고 위와 같은 기술을 한 것이 아니다. 포스탄의 위 저술에서 '누가 촌락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가' 하는 문제는 본격적인 관심대상이 아니었다. 중세 유럽의 촌락공동체에서 '누가 촌락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가' 하는 문제를 규명하려면 엄청난 사료의 소화와 논증이 필요하다.

셋째, 이영훈은 계의 성격이 커뮤니티(community, 공동사회)인가 어소시에이션

69) "The inhabitants of typical village formed a village community collectively administered and possessing formal and informal bodies, courts, assemblies, chests and gilds, which issued and administered the rules of husbandry, watched over local customs of tenure and inheritance, and enforced local peace and order." M. M. Postan, *The medieval economy and society: An Economic History of Britain, 1100-1500.*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p.124.

70) M. M. Postan, 앞의 책(1972), *ibid.*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5.132.14.104 at Wednesday, September 21, 2022 5:55 PM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5.132.14.104 at Wednesday, September 21, 2022 5:55 PM

(association, 이익사회=결사체)인가를 따져 어느 하나로 결론(예를 들어 결사체)이 나면 그것이 계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계의 본질을 상당한 정도로 밝혀줄 것이라는 순진한 논증에 빠져 있다. 이것은 이영훈 이전에 생성된 한국사회사학계의 부적절한 사고방식이다. 한국사회사학계는 퇴니스에 기인하는 이 단순한 발상에서 한시바삐 벗어날 필요[71]가 있다. 촌락공동체의 존부를 규명하는 문맥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13세기 영국의 빌리지에 대하여 478페이지에 달하는 저술을 한 조지 캐스퍼 호만스는 자신의 저술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제25장을 '사회의 해부(the anatomy of society)'라는 제목으로 14페이지에 걸쳐 논하고 있다. 그는 촌락을 분석하는 분석 도구로 (1) 상호작용(interaction), (2) 감정(sentiments), (3) 기능(function)을 구분하고, 덧붙여 (4) 상호작용・감정의 상호의존성, (5) 감정・기능의 상호의존성을 설정한 다음 각각의 층위에 대한 분석을 시도[72]하였다. 하타다 다카시(旗田巍)는 자신의 저서에서 "촌(村)의 토지와 촌의 인(人)-촌의 경계와 촌민의 자격-"이라는 주제로 무려 110페이지에 걸쳐 논의를 전개하였으면서도 끝내 확신을 얻지 못하고 있다.[73] 어느 단체・집단의 성격을 공동체냐 결사체냐는 양자택일적인 문제로 설정하고 결론이 나면 그 집단의 전모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아도 대강 결판이 날 것이라는 단순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 이상 이 담론을 전개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 크리스토퍼 다이어는 일정한 사람들의 결합을 때로는 커뮤니티로, 때로는 어소시에이션으로, 때로는 그룹(group)으로, 때로는 어셈블리(assembly)로 다양하게 표현하였지만 하나하나의 단어에 집단의 성격을 결정짓는 비밀스런 의미를 담지 않았다.

Ⅴ. '근세조선의 동리'의 사회적 성격에 대한 이영훈의 추상(抽象) : '다층이심(多層異心)의 연대(連帶)'설의 제창

유럽의 연구자들이 중세 유럽의 촌락(vill=village)이 실재(real)하는 공동체(village community 혹은 village commune 혹은 Dorfgemeinde)라고 말할 때 그 공동체는 촌락의 구성원들(members) 사이의 인적 결합의 강도가 매우 높음(共同性, cohesiveness)을

71) Dieter Eikemeier, *Documents from Changjwa-ri : a further approach to the analysis of Korean villages* (Wiesbaden : Otto Harrassowitz, 1980). pp.7~12.

72) George Caspar Homans, *English Villagers of the Thirteenth Century* (WW Norton & Co. January 1, 1975), pp.402~415.

73) 旗田巍,『中國村落と共同體理論』(岩波書店, 1973), 57~174면.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5.132.14.104 at Wednesday, September 21, 2022 5:55 PM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중세 유럽의 촌락연구자들은 촌락공동체의 실재성(reality)을 사료(史料)로 입증하려고 무진 애를 쓴다. 다시 말해서 촌락공동체가 실재한다고 말할 때는 입증작업이 수행되어야 그 기술(記述)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 2001년 당시의 이영훈은 그 이전 시기에 나타난 한국의 어느 연구자보다 입증작업과 이론구성을 열정적으로 시도한 연구자라고 평가하여 손색이 없다.

이영훈은 박씨가의 생활일기에 나오는 동계・동약(洞約)과 각종의 목적계 등 계관련 자료들을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김필동의 결론을 따라 일단 동계와 기타 모든 계는 결사체이지 공동체가 아니라고 진단한 다음, “하나의 인격으로 승화된 공동체를 거기서(대저리에서 : 필자) 발견할 수는 없다. 19세기의 대저리를 두고 역사적 실체로서 공동체로 규정함은 무리이며, 이 점은 다른 수많은 동리도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이영훈은 대저리를 전형적인 반촌(班村)이라고 규정하면서 자신의 사례연구는 반촌하나에 대한 사례연구에 그치며 “수적으로 다수인 민촌(民村)에 어떠한 질서공간이 성립하였는지에 대하여 자신은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다.”고 겸손하게 말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점(역사적 실체로서 공동체의 부존재)은 다른 수많은 동리도 마찬가지”라고 일반화한다.

그러면 ‘대저리 동계와 기타 대저리라는 지역적 범위를 전제로 결성된 수많은 계와 그 누적(累積)의 사회적 성격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영훈의 답변은 “그것은 그 범위와 重心을 달리하는 다수의 연망(緣網)과 결사(結社)(이영훈에게 결사란 계이고 연망도 결국은 공동체적인 끈이 아니고 결사체적인 끈중의 하나이다)가 중첩된 관계일 뿐”74)이고 대저리에서 ‘주민으로 구성되어 통합적인 공동업무를 취급하는 촌락공동체’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영훈이 2001년 당시 종래의 연구자들과 달리 새롭게 도입한 용어가 연망(緣網)이라는 용어이다. 그가 활용하는 연망이라는 용어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주목하여 그의 논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세기 대저리에서 성립한 인간관계와 단체의 모형은 그림 7-3과 같다고 생각한다. 아래에 동 → 면 → 군의 지역 경계를 표시하고 중앙에 박씨가를 축으로 세웠다. 우선 박씨가와 2인계의 형태로 관계한 동리 내외의 인간들을 선(線)으로 그렸다. 각 양반가마다 구축한 그러한 개별적 연망을 주요 기제로 하여 대저리의 상하 두 인간 집단은 하나의 질서체로 통합되었다. 이 촘촘한 인연의 그물 위에 원의 형태로 그려

74) 이영훈(2001), 282면.

진 여러 단체가 송계(松契) → 동계(洞契) → 천방계(川防契) → 학계(學契) → 종계(宗契) → 면계(面契) → 향계(鄕契)의 순서로 중첩되어 있다. 순서는 각 단체의 지역 범위에 따른 것이다. …”[75)]

“대저리의 박씨가문이 남긴 일기를 비롯한 풍부한 자료들이 전하는 18세기초 이래 2세기간의 동리의 역사를 추적하였다. 그 성과를 간단하게 요약한다. …

3) 1810년대에 상리, 하리, 백학리로 분동(分洞)된 이후 상・하리의 박・권씨 두 양반집단의 연합으로 성립한 동리지배체제는 1860년대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반상(班常)의 상하질서는 엄격하였으며 동계・천방계(川防契)・송계(松契)를 주체로 한 제반 공공업무의 수행은 원활하였다.

4) 반상(班常)의 두 집단을 통합한 중요 기제는 단체적 규범이라기보다 선(線)의 연망(緣網)으로 상호 의존과 신뢰를 구축한 2인계(契)였다. 수많은 2인계가 촘촘히 깔린 바탕 위에 양반신분을 정상 성원으로 하는 자발적 결사(結社)로서, 기금(基金)・기답(基畓)에 대한 지분의 연합으로서, 송계・동계・천방계・학계・종계・면계・향계 등이 그 위에 중첩되어 있었다. 각 계의 구성원과 지역 범위는 각각 달랐고 그 중심(重心)이 모두 본 대저리에 있지도 않았다. 이렇게 각종 형태의 연망과 결사가 다층이심(多層異心)으로 걸쳐 있음이 19세기 대저리의 구조였다.”[76)]

우선 이영훈의 연망이라는 용어 사용은 그의 독창적인 발상일까 아니면 국내외에 선행하는 다른 학술적 성과가 있는 용어일까?

앞에서 인용한 아다치의 저술에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다.

“봉건제의 성숙 이래 일본 사회는 집단중적(集團重積)형의 구조를 특징으로 움직인다. 나까네 찌에(中根千枝)씨의 지적에 의하면 일본 사회는 폐쇄적인 집단을 단위로 하고, 그것이 깨지지 않는 집단의 집합으로서 상위의 집단이 구축되어 간다. 개개의 집단은, 전근대에는 자율능력을 가진 공동단체였다. 사회인류학자는 동남아시아 등에서 보이는 사회를 네트워크 사회로 특징지운다. 사람들이 단체를 구성하지 않고 개별적인 이자(二者) 관계를 맺고 있다. 무한하고 종횡(縱橫)으로 연결되는 이자간 관계의 총화가 되는 네크워크 사회로서 존재한다. … 중국은 기본적으로 비단체적인 이자간 관계적인 사회에 속한다. 그러나 그 연결짓기는 동남아시아 사회보다도 강고하다고 생각된다.”[77)]

---

75) 이영훈(2001), 281~282면.
76) 이영훈(2001), 296~297면.
77) 足立(1998), 70~72면.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5.132.14.104 at Wednesday, September 21, 2022 5:55 PM

아다치가 소개하는 네트워크와 이영훈의 연망 개념, 아다치가 소개하는 ‘이자(二者) 관계’와 이영훈이 대저리에서 발견한 ‘2인계’ 개념은 친화성이 있는 개념들이다. 아다치의 분석의 초점은 중국 명청 시대의 촌락과 일본 근세의 촌락을 대조(對照)하는 데 있었다. 어느 각주에서 아다치는 조선의 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흥미 있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 “촌락 전체를 표현하는 공동단체가 포괄적으로 공동기능을 발휘한 일본의 무라와, 그와 같은 단체가 존재하지 않고 사회적 기능은 사적(私的)으로 수행되든가 목적별 임의단체에 의하여 수행된 중국 촌락을 대비하면 조선 촌락은 양자의 중간적인 성격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거기서는 목적별로 다수의 계로 불리우는 집단이, 사회적 제기능을 수행하였다. 계에는 일본의 강(講)과 같이 목적별 임의단체도 존재했지만 동시에 동리계와 같이 촌락 전체를 표현하는 단체도 존재했다.”[78]

조선의 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 아다치는 조선에서 “동리계와 같이 촌락 전체를 표현하는 단체”가 존재하였음을 알고 있었다. “조선 촌락은 양자의 중간적인 성격을 보여준다.”는 기술에서 아다치는 일단 조선의 촌락이 중국의 촌락과는 질적으로 다름을 인정한 것(물론 근세 일본의 촌락과도 다름을 인정한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또한 아다치는 모든 동계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일부의 동계에는 일본 근세의 무라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사례가 있음을 인정한 게 아닐까?

요컨대 이영훈의 연망 개념도 기존의 ‘결사체(계)’ 개념과 크게 차이나는 개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영훈은 “대저리 그 자체는 말단 행정단위로서 주민의 거주지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주민을 성원으로 하는 통합적 기능과 권위의 주체로서 공동체의 존재는 거기서 발견되지 않았다.”[79] 혹은 “이들 선(線)의 연망과 원(圓)의 결사체를 걷어낸다면 맨 아래 **대저리라는 행정단위**에 무엇이 남을까. 주민의 주거지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경지와 산림이 평면으로 배치되어 있을 뿐”[80]이라고 하여 그가 말하는 ‘주민 모두가 구성원이 되는 동리’로서의 대저리가 행한 업무가 전혀 없는 것처럼 논증한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이 3군데에서 ‘동리로서의 대저리’가 행한 업무를 인정한 바 있다.

---

78) 足立(1998), 74면 각주 4).
79) 이영훈(2001), 282면
80) 이영훈(2001), 297면.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5.132.14.104 at Wednesday, September 21, 2022 5:55 PM

"ⓐ 대저리의 상하 두 인간집단을 통합한 가장 포괄적이며 중요한 조직은 동약으로도 불린 동계였다. 박씨가의 여러 자료에서 보는 동계의 조직 및 운영 양태는 이미 잘 알려진 다른 여느 동리의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동계가 수행한 공공업무로서는 동제(洞祭), 서당(書堂), 공동납(共同納), 공동노동(共同勞動), 부조(扶助), 치안(治安) 등을 들 수 있다."[81]

"ⓑ 공동납은 예천군이 대저리에 총액으로 부과한 환곡전을 동리민이 공동으로 납부함을 말한다. 1845년 6월 6일의 일기에는 환곡을 전(錢)으로 납부할 일로 동중의 대소를 불문하고 모두 모였다고 적혀 있다."[82]

"ⓒ 두레로 보이는 공동노동도 동리에 의하여 조직되었다. '동중에서 3파(派)를 나누어 논의 김매기를 하였다(1852.5.24.)라고 한 것을 보아 세 단위의 두레패가 있었던 듯하다. 동군(洞軍)으로도 불린 두레패가 김을 매어주면 답주(畓主)는 그 보답으로 운답전(耘畓錢)을 지불하였다. 1857년 6월 득령가는 두락당 8푼의 운답전을 내고 15두락의 논을 두벌매기 하였다. 운답전의 징수의 지출의 주체는 동리였다. 1849년 10월 10일의 일기에는 동회가 운답전을 거두어 비용과 잡리를 맞추었다고 적혀 있다."[83]

첫째, 대저리 동계가 동제(洞祭), 서당(書堂), 공동납(共同納), 공동노동(共同勞動), 부조(扶助), 치안(治安) 등의 공공업무를 수행하였다(ⓐ, ⓑ, ⓒ)면 이 동계는 거의 동리가 수행할 만한 공공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누락된 것은 겨우 수리(水利), 산림의 공동소유・공동이용 정도이다. 둘째, 대저리 동계가 공동납을 수행(ⓑ)하였다면 그 동계는 적어도 대저리 동리가 수행하여야 할 공적 업무의 중요한 일부를 수행한 것이다. 유럽 중세의 촌락이나 근세 일본의 촌락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공동납이었다. "환곡을 전(錢)으로 납부할 일로 동중의 대소를 불문하고 모두 모였"다면 이 모임은 동계의 모임이 아니라 이영훈이 상상하는 동리의 모임이다.

셋째, 대저리 동리는 공동노동을 주관하였다(ⓒ). 공동노동의 주관은 유럽 중세의 촌락이나 근세 일본의 무라가 수행한 공통적인 업무였다.

요컨대 이영훈이 전하는 대저리 동계・동리는 '산림천택의 공동소유・공동이용'을 제외한 포괄적인 공동업무를 수행하였다. '산림천택의 공동소유・공동이용'을 뺀 나

81) 이영훈(2001), 269~270면.
82) 이영훈(2001), 270면.
83) 이영훈(2001), 270면.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5.132.14.104 at Wednesday, September 21, 2022 5:55 PM

머지의 광범하고 포괄적인 공공업무를 대부분 수행하는 촌락이 있을 경우 단지 '산림천택의 공동소유・공동이용'이 없거나 미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촌락공동체의 존재를 부정하여야 할 것인가?

그런데 다음에서 살펴볼 충청북도 옥천군과 괴산군의 마을들에서는 동계・동리가 '산림천택의 공동소유・공동이용'도 하고 있었다.

Ⅵ. 충청북도 옥천군과 괴산군의 사례

수원박물관에 '이유재산처분(里有財産處分)에 관한 사항'이라는 문건이 보관되어 있다. 내용상 1912년에 발간된 관습조사보고서에서 요약・정리[84]하기 전(前)의 기초자료로 보인다. 관습조사보고서에는 누락되었지만 필자가 궁금해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관습조사보고서보다 이 문건의 내용을 중심으로 충청북도 옥천군과 괴산군의 사정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 문건이 묘사하는 내용 중 (1) 동리의 법인격, (2) 동리가 취급하는 공공사무, (3) 동리 소유의 재산, (4) 동계와 동리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1. 옥천군(沃川郡)의 사례

일본인 조사 당국이 설정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응답한 조선인 응답자는 1. 전(前) 의관(議官) 강경희(옥천면 문정리, 66세), 2. 농민 유인원(옥천면 하계리, 65세), 3. 농민 김태성(옥천면 문정리, 48세), 4. 전(前) 주사(主事) 정태국(옥천면 죽향리, 52세), 5. 현(現) 구장(區長) 송지헌(47세) 등 5명이다.

> "① 상존위(上尊位)(나중에 '係任'으로 개칭)의 사무는 동내(洞內) 조세(租稅)의 수납(收納)을 맡는 외에 공공사무(公共事務), 예를 들어 도로・교량의 수축(修築) 등 동민(洞民) 전부가 부담해야 할 일 등으로서 이 사무의 수당(手當)으로 세(稅) 1량당 엽전 2푼을 지급한다(조세금납의 시대).
> ② 약 17・18년 전(광무의 막바지 경) 상존위의 명칭이 이장(里長)으로 바뀌었다. 이장의 사무는 대체로 상존위의 그것과 같다.
> ③ 동(洞)이 소송하는 일이 있다. 소지(所志)(소장)로 하되 동민과의 협의 하에 동민

84) 조선총독부 중추원, 『관습조사보고서(1912)』, 35~36면.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5.132.14.104 at Wednesday, September 21, 2022 5:55 PM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5.132.14.104 at Wednesday, September 21, 2022 5:55 PM

전부 혹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와의 연서(連署)로 한다. 인장(印章)이 없을 때 혹은 원래 인장이 없는 자는 무인(拇印)을 찍는다.

④ 연명(連名) 없이 상존위와 동장(洞長)만의 명의로 소지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고신(考信)으로 불리는 동(洞)의 인장이 있어 반드시 그 연월일에 그것을 압날하면 동민의 협의를 경유한 증거가 된다. 이것이 없으면 동민의 협의가 없는 것이 되어 군수가 수리하지 않는다. 고신은 '모(某) 동(洞)의 인장'이라는 글자를 새겨 나무로 만들어 관(官)에서 동(洞)에 교부하고 상존위 혹은 동장(洞長)이 보관한다.

⑤ 타동(他洞)과 상담(相談)할 일이 있는 경우에는 동민(洞民)과 먼저 협의하고 그 협의의 취지에 따라 동장이 교섭하는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도로 혹은 교량의 수축・가설에 있어 타동과 공동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혹은 산판(山坂)[송계(松契)]이 타동과 연접(連接)할 때에는 동장이 대표자가 되어 교섭하는데 이 경우에도 마지막 결정은 동민의 협의로 하며 동민의 협의 없이 동장이 하는 경우는 없다.

⑥ 이장(里長)이 생긴 이후에는 상존위도 없고 동장도 없다. 상존위와 동장이 하던 사무를 이제는 이장이 한다. 소송행위는 이장과 중요한 지위에 있는 자, 즉 두민(頭民)이 연서하여 관에 소지를 제출하고 이장 1인만이 제출하는 경우는 없다. 타동과 교섭하는 경우에도 이장 독단으로 처치하는 경우도 없다. 협의는 그 대다수로 결정하고 이장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다.

⑦ 이(里)는 재산을 소유한다. 이가 소유하는 재산으로는 동유산(洞有山), 전답, 현금, 송계(山坂)[산판은 송계와 다르나 당지(當地)에서는 산판이 곧 송계라고 함) 등이 있다. 이유(里有) 산판은 각리(各里)에 있다고 한다. 주로 송(松)을 금양하고 그 수목의 벌채로 얻은 수입은 이의 공동비용에 충당한다고 한다. 원복전답(元卜田畓)은 송계의 수입으로 구입하거나 갹금(醵金)으로 매입하였다. ⑧ 현금(이하 생략)"

이장(里長)이 담당하는 사무가 동리(洞里)의 사무이다. 옥천군 관내의 이(里)는 조세(租稅)의 수납(收納), 도로・교량의 수축(修築)을 담당하였다(①). 이(里)에는 동유산(洞有山)이 있고(⑦),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송계(松契)를 운영하고 있으며(⑤), 법인격도 있다(③, ④). 이 정도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1910년대 옥천군 관내의 동리는 이영훈이 상상하는 통합성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옥천군 관내의 이(里)는 이의 명의로 다른 동리와 협의도 한다는 사실이다. ④에서 언급되는 '동(洞)의 인장'은 다른 사료[85]로 입증되고 있다. 위와 같은 조선인의

85) 전민영(2017), 251면에는 항리(項里)의 인장이 찍힌 완의(完議)의 이미지가 게재되어 있다. 이 문맥에서 완의(完議)란 항리 주민들의 의사합치로 일종의 촌락규범을 지칭한다.

응답 내용은 어느 정도로 실체에 부합하는 것일까?

1980년대를 전후하여 전라남도 완도군 장좌리에서 운용하던 동약(洞約)을 분석하여 장좌리의 민속지(民俗誌)를 작성한 디터 아이케마이어는 조선의 촌락은 “고립되어 주변 촌락과 경쟁하거나 협조하여야 할 유인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86]하였지만 그런 추정과 다른 모습(⑤, ⑥)이 보인다.

이영훈은 ‘주민 모두가 구성원이 되는 동리’로서의 대저리(행정동리이다)가 행한 업무가 전혀 없는 것처럼 논증하였지만 그 논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례를 옥천군의 동리가 보여주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용기가 전하는 전남 장흥군 ‘어서리 동계・어서리 동리’도 옥천군 관내의 동리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어서리 동계는 부세의 공동납에 대응하고 마을 주민들의 공공복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동유재산을 운영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범례에 주산시초(主山柴草), 주산가경(主山加耕), 혼상구(婚喪具) 운용에 대한 규정이 있다. 주산은 어서리에 있는 작은 산으로 현재에도 동유지(洞有地)로 남아 있는 동산(洞山)이며, 주산시초는 전통적으로 어서리의 주요 수입원이었음을 동안(洞案) 서문에서도 확인했었다. 주산가경은 동산인 주산을 개간하여 밭을 일구는 것을 말하는데, 동민들이 가경전(加耕田)을 만들 때 경지가 균등하지 않아 분란이 생기는 경우에는 공사원(公事員)의 책임하에 해결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어서리는 동산인 주산 이외에도 상여・차일・목기 등 상장혼례에 사용되는 기물을 동계 차원에서 공동으로 장만하여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어서리는 동계가 중수될 당시에 부세의 부담을 견디기 힘들 정도로 경제 곤란을 겪고 있었는데, 동계 차원에서 동유지인 주산을 관리하고 혼상구 같은 동유기물(洞有器物)을 장만하여 동민들에게 경제적 뒷받침을 한 것이다.”[87]

옥천군의 마을 사례는 이영훈이 제시하는 [요건1], [요건2]를 제외하고, [요건3], [요건4], [요건5]를 완벽하게 충족시킨다.

---

86) Dieter Eikemeier, *Documents from Changjwa-ri : a further approach to the analysis of Korean villages* (Wiesbaden : Otto Harrassowitz, 1980). p.80.

87) 이용기, “19세기 후반 班村 洞契의 기능과 성격 변화 - 전남 장흥군 어서리 동계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91, 2008.9[이하 이 논문은 ‘이용기(2008)’로 인용함], 276면.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5.132.14.104 at Wednesday, September 21, 2022 5:55 PM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5.132.14.104 at Wednesday, September 21, 2022 5:55 PM

2. 괴산군(槐山郡)의 사례

일본인 조사 당국이 설정한 질의 사항에 대하여 응답한 조선인들은 농민 송준영(괴산면 서부리), 현(現) 구장(區長) 김동헌(괴산면 동부리), 농민 이기영(괴산면 서부리), 농민 이규철(옥천면 동부리), 현(現) 구장(區長) 신상우 등 5명이다. 괴산군(槐山郡)의 사례는 옥천군(沃川郡)의 사례와 거의 비슷하다(②,③,⑤,⑥). 그러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옥천군의 사례에 나타나지 않은 특이한 점만을 추가로 언급하겠다.

> "① 갑오년 전후에 이동(里洞)의 장(長)을 상계(上稧)로 부른 일이 있다(옥천군의 상존위에 해당). 상계의 명칭이 있음은 양반계급이 많은 지방으로서 당군(當郡 : 괴산군)의 특칭이다. 이동민 중에 일좌(一座), 이좌(二坐), 삼좌(三坐)를 선정한다. 일좌는 상계, 이좌는 그 후보자, 삼좌는 일좌의 보조이다. 각 1명씩 정한다. …
> ② 이장은 세금, 공공사업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외에 주민의 협의로 결정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자(대표)로서 주민을 대표하는 일이 있다. 예를 들어 타동과의 교섭사항 등과 같다.
> ③ 소송을 하는 경우 혹은 이동(里洞)의 이해에 관한 사건은 이동민의 결의를 경유함을 통례(通例)로 하고 이장 독단으로 집행할 수 없다. …
> ④ 상계에는 수당이 없지만 이장에게는 이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월 1원 내지 3원을 지급한다. 이전(갑오 전후보다 이전)에는 실무자에게 미(米)나 맥(麥) 약간을 지급했다고 한다.
> ⑤ 이(里)는 재산을 소유한다. 전답, 금전, 산림 등이다.
> ⑥ 동부리는 원복산림(元卜山林) 약 10정보를 갖고 있다. 몇 대 전부터의 일로서 취득원인불명이지만 동민은 연료를 채취하여 왔다. 그러나 토지조사시 국유로 편입된 후 …"

"갑오년 전후에 이동(里洞)의 장(長)을 상계(上稧)로 부른 일이 있다(옥천군의 상존위에 해당)"(①)는 부분이 주목된다.

첫째, "16, 17세기 성행했던 상계・하계의 합계 형태가 신분갈등으로 점차 분동(分洞)의 과정을 밟아 19세기에는 상하합계가 소멸하였다."는 것이 종래의 연구결과였다. 그러나 괴산군(槐山郡)의 사례는 19세기에도 상하합계의 동계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88] 다음에서 소개하는 강원도 원주부의 요선계・요선동리도 괴산

---

88) 이 기술(記述)에 합치하는 연구성과도 있다. "19세기 이래 동계는 약화되는 추세에 있었고 결국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소멸한다."는 종래의 연구성과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19세기 동계는 "① 동계의 범위가 마을(자연촌=舊洞里) 단위로 소규모화하는 경향"을 보이며, "② 동계의 기능이 부세의 공동납에 대응하

군의 사례와 일치하므로 괴산군의 사례가 예외적인 사례라고 치부하기 어렵다.

둘째, 괴산군에 사는 주민들의 감각으로는 동계와 동리의 구분이 희미하다(④). 여기서 '동계와 동리를 확연히 구분하여 왔던 종래의 파악방식에 수정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3. 1865년의 거제부(巨濟府) 항리(項里)의 사례

거제도 항리(項里, 구조라리)의 마을회관에는 18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에 작성된 184건의 고문서가 소장되어 있다.[89] 이 고문서를 분석하면 앞에서 소개한 옥천군과 괴산군 관내의 동리에 관한 보고가 사실에 근접하는 보고임을 알 수 있다. 항리는 진상(進上)과 요역(徭役)을 납부하기 위하여 여러 마을이 촌락군을 형성하여 하나의 납세단위가 되어 부세와 부역을 수행하였다. 개별 가호(家戶)가 아닌 촌락 하나 혹은 여러 촌락이 납세단위가 되는 것이다. 또한 옥천군의 사례 ③에서 언급하는 연명(聯名) 관행과 '동(洞)의 인장'에 관한 기술(記述)이 빈말이 아닌 사실임을 알 수 있다.

> "을축(乙丑)년 완의(完議)는 1865년에 항리, 왜구리, 망치리, 양화리, 와일곶(와현) 다섯 마을의 이임(里任)이 함께 작성하여 문서 본문의 내용을 약조한 완의문이다. 〈圖 10〉을 보면 본문이 작성된 후에 '후(後) 참원(參員)'이라 하여 참가한 이임들의 이름과 착명이 적혀 있는 별지가 본문이 적힌 문서에 점련(粘連)이 된 형태이다. 작성날짜인 '을축 5월 15일 마지막 부분에 찍힌 [항리인(項里印)]이라 쓰여 있는 직방형의 인장은 항리 마을의 것이며 …" [90]

이 184건의 고문서는 마을이 작성주체인 희귀한 고문서이므로 다음 기회에 상세히 분석할 예정이다.

는 것에 무게를 두는 경향"을 보이며, "③ 일반적으로 신분제적 질서가 상당히 약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용기, "19세기 동계의 마을자치조직으로 전환에 관한 시론", 『사학연구』128호, 2017[이하 이 논문은 '이용기(2017)'로 인용함], 314~319면.

89) 전민영, "18세기 말~19세기 해촌(海村)의 공동납(共同納) 운영 방식 - 거제(巨濟) 구조라리(舊助羅里) 고문서를 중심으로 - ", 『고문서연구』 48권 (2016)[이하 이 논문은 '전민영(2016)'으로 인용함), 135면.

90) 전민영(2016), 158면.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5.132.14.104 at Wednesday, September 21, 2022 5:55 PM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5.132.14.104 at Wednesday, September 21, 2022 5:55 PM

4. 1895년 11월의 향회조규급향약판무규정(鄕會條規及鄕約辦務規程)'과 그 후속조치

1895년 11월 지방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성립된 '향회조규급향약판무규정(鄕會條規及鄕約辦務規程)'[91]과 그 후속조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 규정은 향회를 소회(小會)・중회(中會)・대회(大會)로 나누어 구성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이 글의 관심사는 소회에서 취급할 업무의 내용에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촌락이 담당해야 할 촌락의 공동업무는 다음과 같다.

1리(里) 30호를 기준으로 소회[里會]를 구성한다. 이회(里會)에서 논의할 안건은 ① 권농・권학과 제반 교육 등사(等事), ② 호적(戶籍)・지적(地籍)의 교정(校正) 등사, ③ 염황・환난의 상구(相救)와 위생(衛生) 등사, ④ 사창곡(社倉穀) 영호사(另護事), ⑤ 도로・교량의 수축사, ⑥ 식산흥업 등사, ⑦ 공공산림과 제언수축 등사, ⑧ 제반세목과 납세사, ⑨ 부랑난류잡기흉주 불효・불제・불목 등 영칙(令飭) 금단사, ⑩ 제반계회(諸般稧會) 등사, ⑪ 범관령거행(凡官令擧行) 등사[92]였다. 촌락의 공동업무가 위와 같이 설정되면 적어도 1895년 11월 이후의 조선 촌락의 공동업무는 이영훈이 상상하는 동리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다. 그중에서 주목을 요하는 사항은 '⑩ 제반계회 등사'이다. 동계는 물론이고 촌락 안에서 거행되는 모두 계회의 업무를 동리가 취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93]이 주목된다. '향회조규급향약판무규정'과 그 후속조치는 이영훈의 주민 모두로 구성되는 동리 부재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례이다.

Ⅶ. 1744년에 결성된 요선계・요선동리의 분석

이제 특정의 근세 조선의 촌락사료를 가지고 이영훈의 논증을 검증해 보자. 필자가 선택한 샘플은 1744년에 작성된 요선계・요선동리 자료이다.

---

91) 송양섭, "1896년 智島郡 創設과 西南海 島嶼 支配構造의 再編 -吳宖默의『智島郡叢瑣錄』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26, 2007[이하 이 논문은 송양섭(2007)로 약칭함], 221면.

92) 신안군 향토문화진흥원, 『지도군수 오횡묵 정무일기(1895.2-1897.5)』(1992), 70~73면.

93) 1895년 11월의 '향회조규급향약판무규정(鄕會條規及鄕約辦務規程)'이 현실적으로 작동하였음은 이용기와 안승택의 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도 동계(洞契)나 동회(洞會)와 같은 마을자치기구가 마을 내 각종 조직들의 구성과 활동을 제어하고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의 계들은 마을자치기구의 하부조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독립한 별도의 조직으로 존재하였음도 확인된다." 안승택, "한 현대농촌일기에 나타난 촌락사회의 계(契) 형성과 공동체 원리", 『농촌사회』 제24집 제1호(2014), 7면.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5.132.14.104 at Wednesday, September 21, 2022 5:55 PM

요선계・요선동리는 조선 중기 이래 중방동・도곡동・두릉동・하동・도내 등 5개 자연동리[94]에 거주한 재지 사족 가운데 원주 원씨(元氏)・원주 이씨(李氏)・청주 곽씨(郭氏)가 결성한 이른바 상하합계 형태의 동계・동리[95]이다. 요선계・요선동리의 특이성은 18세기 이후에는 상하합계가 깨지고 분동이 일반화된다는 종래의 향촌사회사학의 통설과 달리 상하합계의 상태로 20세기 초반까지 지속되었다[96]는 점이다. 1744년 당시에는 다음과 같이 계원・동리민(洞里民)이 양반인가 상천민인가 여부에 따라 동계・동리조직으로부터 받는 권리의무가 달랐다.

> "㉠ 상계(上契)원이 상을 당하면 동임(洞任)이 발문하여 모두에게 알리고, 동내(洞內)에서 모두 모여 염빈할 때에 잘 거두어 돌본다. 장사 지낼 때에는 밤을 새워 상을 호상(護喪)하고 잘 살펴 무덤을 만든 후에야 귀가한다(上稧有喪 則洞任發文通告 洞內齊會 董護殮殯 葬時徹夜護喪 因爲行葬 看撿成墳後罷歸事)."[97]

> "㉡ 시집가고 장가가는 예식을 행할 때는 술・과일・닭・꿩 중에서 부조하되 상계원의 예식 때에만 이 규정을 준수한다(嫁娶行禮時 或酒果鷄雉中扶助 而上契只用此規事)."[98]

1772년과 1774년 두 번에 걸쳐 원주부사(原州府使)가 수결한 절목[99]이 붙어 있어 적어도 1772년 이후에는 원주부가 요선계와 요선동리의 행정동리 자격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영훈의 기준에 따르면 요선계・요선동리[100]는 촌락공동체 자격이 부정될 것이다. 요선계・요선동리는 일견 '주민 모두로 구성되는 동리'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적어도 19세기 조선의 촌락민들중 일부는 동계와 동리를 혼동하여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동계와 동리는 혼융・중

---

94) 5개 자연동리는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무릉리와 도원리로 통합되었다고 한다. 오영교, 조선후기 동계의 구조와 운영, 『조선시대사학보』 24(2003)[이하 이 논문은 '오영교(2003)'으로 인용함], 33면 각주 7)에서 재인용.

95) 오영교(2003), 30면, 38면.

96) 오영교(2003), 31면.

97) 원문은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요선계, 『邀僊稧文籍探究(2012)』[이하 이 책은 '요선계문적탐구(2012)'로 인용함], 29~30면을 인용하였지만 번역은 필자가 수정하였다. 이하 같다.

98) 요선계문적탐구(2012), 34면.

99) 이서층(吏胥層)과 서원(書員)들의 농간을 엄금하겠다는 취지로 원주부사가 요선계・요선동리에 다짐하는 내용의 절목이다.

100) 요선계의 기초가 된 지리적 의미의 행정동리는 끊임없이 변화되는데 임진년(영조48, 1772)에는 '水周面'(임진년 節目) [요선계문적탐구(2012), 65면], 갑오년(영조50, 1774) [요선계문적탐구(2012), 69면]에는 '水周二里'(갑오년 節目)였다.

첩되어 있는 상태인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에서 언급되는 '동내(洞內)'란 이중(里中) 혹은 동중(洞中)[101]을 지칭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 해석이 맞다면 동계조직이 이영훈이 상상하는 동리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 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다음에 강신회(講信會)와 공회(公會)를 구분하여 기록한 요선계・요선동리 입약(立約)을 보자.

> "㉢ 강신일이나 공회시에 모두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자기말만 고집하며 공손하지 못한 어투로 술에 취해 시끄럽게 다투고 큰소리로 서로 힐난하며 동(洞)의 규약을 어지럽히면 죄가 무거우면 손도하고 죄가 가벼우면 모두의 면전에서 질책한다. 하인(下人)이면 경중에 따라 태벌(笞罰)을 다소간 시행한다(講信或公會時 不從僉議固執私見言辭不恭 使酒喧爭高聲相詰渴亂洞規者 重則損徒輕則面責齊進 下人則從輕重笞罰多少事)."[102]

강신(講信)은 요선계의 계회(契會)를 지칭하고 이와 구별되는 공회(公會)는 요선동리의 공동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적 회의(formal assembly)를 지칭한다. 요선계는 상하합계이므로 요선계의 구성원은 동리의 주민과 대체로 합치할 것이다. 1910년대 충청북도 옥천군과 괴산군의 주민들이 동계와 동리의 구분을 잘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다음에 "㉠ 상계(上契)원이 상을 당하면 동임(洞任)이 발문하여 모두에게 알리고, 동내(洞內)에서 모두 모여 염빈할 때에 잘 거두어 돌본다."는 입규(立規)를 보자. 동임은 요선동이란 행정동리의 일을 맡아보는 직임이다. 갑오년(영조50, 1774) 절목의 제목이 '水周二里 頭民及洞任'[103]으로 되어 있어 그렇게 해석된다. '동임(洞任)이나 두민(頭民)'이란 동계에 친한 직임이 아니고 동리에 친한 직임[104]이다. 본래 사적인 계기로 동계가 조직되었지만 상하합계의 형태로 대부분의 동민이 동계의 구성원이 되는 때에는 그 동계가 동시에 이영훈이 상상하는 동리도 되는 것이 아닐까?[105] 동계와

---

101) 정약용(1762~1836), 『아언각비(雅言覺非)』, "今俗里爲洞 里中曰洞內 里甲曰洞長 里會曰洞會." 김인걸(1984), 98면 각주 3)에서 재인용.

102) 요선계문적탐구(2012), 32면.

103) 요선계문적탐구(2012), 66면은 '水周二里 面民及洞任'으로 탈초하였으나 영인된 69면을 잘 보면 '水周二里 頭民及洞任'으로 보인다.

104) 신안군 향토문화진흥원, 『지도군수 오횡묵 정무일기(1895.2-1897.5)』(1992), 67면. "두민은 관의 지시를 받아 마을의 일을 맡는 사람이다. 두민이라 칭하는 것은 마을의 장로이자 일에 밝아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5.132.14.104 at Wednesday, September 21, 2022 5:55 PM

동리의 관계를 좀 더 선명히 파악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이용기는 "조선 중기에 사족층의 향촌지배기구로 등장했던 동계는 조선 후기에 들어서, 특히 19세기를 경과하면서 자연촌 단위의 마을자치기구로 전환"106)되었고, "그 결과 반촌(班村)과 민촌(民村)을 불문하고 널리 확산되었으며, 다양한 목적계와 계조직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구심 역할을 했다."107)고 파악하였다. 이용기는 위의 인용문에서 동계를 '마을(이영훈의 동리에 상응하는 실체로 보인다 : 필자 첨가) 자치기구'로 표현하였는데 다른 곳에서는 "마을과 동계의 통합성"108), 혹은 "동계가 마을운영의 중심조직"109)이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동계와 동리의 관계를 이용기나 안승택처럼 관찰(동계가 마을운영의 중심조직)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필자가 보기에 19세기 말이 되면 동계와 동리는 혼융・중첩되는 단계로 진입하는 것처럼 보인다. 몇몇 연구자들은 동중(洞中)을 특이한 논의구조로 파악110)하고 있다. 그러나 동중은 동(洞)의 구성원 전체(village as a whole)를 지칭하는 용어로써 이영훈이 상상하는 동리와 같은 의미이다. 이에 대하여는 별고에서 상세히 논증할 예정이다. 여기서는 하나의 증거만 제시하겠다. 거제도 항리는 이민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항리 자체의 재산으로 삼았다. 그 매입계약서가 남아 있는데 매수인 명의를 항리동(項里洞)으로 작성된 것이 있는가 하면 매수인 명의를 항리동중(項里洞中)으로 작성된 것도 있다.111) 2021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송양섭은 동계(洞契)와 동중(洞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아래 인용문에서 동중을 동리로 치환하여 읽어도 문맥파악에 전혀 지장이 없다.

> "이 글이 주로 다루고자 하는 동전(洞錢)과 관련해서는 전라도 장흥지역 촌락에 대한 일련의 사례연구가 많은 시사를 준다. 이들 마을은 서로 미묘한 차이를 보이면서 공통적으로 동계・동중 차원의 식리전(殖利錢)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양상이 관찰된

---

105) 오영교(2003), 31면은 면리제 기구의 담당자인 동임(洞任)이 수행하는 역할을 '공적 사회제도', 동계조직이 수행하는 역할을 '사적 사회조직'으로 지칭하면서, 향촌사회조직의 이중성, 즉 '면리조직과 향약・동계 조직이 동일한 촌락단위 위에 공존하는 현상'(65면)으로 인식하고 있다.

106) 이 보고는 1895년 11월의 향회조규급향약판무규정(鄕會條規及鄕約辦務規程)과 그 후속조치와 관련성이 있을 것 같다.

107) 이용기(2017), 310면.

108) 이용기(2017), 336면.

109) 이용기(2017), 345면.

110) 송양섭, "19세기~20세기 초 巨濟 舊助羅里의 洞中과 洞錢의 운영", 『한국문화』 94(2021), 393면, 397~409면.

111) 『고문서집성』 3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438~439면.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5.132.14.104 at Wednesday, September 21, 2022 5:55 PM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5.132.14.104 at Wednesday, September 21, 2022 5:55 PM

다. 어서리의 경우 동계차원의 식리전을 운영하여 마을에 가해지는 각종 부담에 대처하고자 하였고, 모산리의 경우 동중(洞中)과 동계(洞契)가 연동하면서 식리수입을 통해 마을에 가해지는 각종 부세에 공동대응하고 있다. 도서지역인 금당도 차우리는 동계전(洞契錢)을 통해 행정・부세 관련 비용에 지출하였으며 목계전(木契錢)을 운영하여 동중연역(洞中烟役)에 충당하였다. 목계전의 수입은 일제 강점기에 접어들어 간척, 어장관리, 부동산 매입 등의 용도로 쓰여졌다."[112]

향후에 거제도 항리와 유사한 촌락공동체 사례를 더 많이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하에서는 요선계・요선동리의 사례를 기초로 요선계・요선동리의 촌락공동체성을 검토해 보겠다.

1. 이영훈의 [요건1], [요건2], [요건3]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

필자는 이영훈이 제시하는 [요건1(구성원 사이의 평등성)]과 [요건2(가입과 탈퇴의 선택불가능성)]의 기준을 잘못된 기준으로 보고, 조선의 촌락은 [요건3(독자적 인격)]의 요건을 구비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검토할 필요가 없다.

2. 요선계・요선동리가 이영훈의 [요건5(공동체가 취급하는 공동업무의 통합성・광범성)]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요선계・요선동리가 취급하는 공동업무에 다음과 같이 경찰・치안(治安)(㉣, ㉤)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도로의 보수와 교량의 수리가 포함(㉥)되므로 요선계・요선동리가 이영훈의 [요건5]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섣불리 판정할 일은 아니다.

"㉣ 앞에서는 옳다 하고 뒤에서는 비방하며, 다른 이의 선행은 감추고 잘못만을 드러내며, 하찮은 일로 다투고 싸움이 그치지 않으며, 없는 일을 꾸며 남을 죄에 빠지게 하고, 남의 재산을 빼앗을 것을 모의하여 이치에 맞지 않은 일로 송사를 일으키고, 뜬소문을 조작하여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을 어지럽히는 등 행실이 착하지 않아 잘못이 크면 관에 보고하여 처벌받게 하고, 잘못이 작으면 그 죄를 논하여 손도하거나 출동시킨다(面是背非 隱人之善 揚人之過 爭狎小故鬪鬩不息 誣罔搆捏陷人罪罟 非理起訟謀奪人財 造作浮言亂人廳聞 爲行不善者 大則報官科罪小則論罪損黜事)."[113]

---

112) 송양섭, "19세기~20세기 初 巨濟 舊助羅里의 洞中과 洞錢의 운영", 『한국문화』 94(2021), 395면.
113) 요선계문적탐구(2012), 24면.

"㉤ 남의 재물을 도둑질하고 남의 노비를 숨겨주는 자가 발각되면 동계 내에서 모두 모여 그 죄를 중히 다스린다. 백성들 간에 농작물을 도둑질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경중에 따라 태벌을 과한다(盜竊人財者 匿人臧獲者 現露則洞內齊會重治厥罪. 閭閻間草竊亦爲禁斷 從輕重笞罰事)."[114]

"㉥ 산골 간에 길이 험하고 초목이 무성하여 마을 사람들이 각자 적당히 힘을 모아 7~8월에 풀을 깎아 길을 닦고 9~10월에는 다리를 고치는 것으로 규칙을 정하여 이로써 편하게 왕래하도록 한다. 혹 성실하게 시행하지 않으면 유사는 잘 보고 살펴서 벌을 준다. 한 사람당 벌전미 1말을 징수하고 또 납부하지 않으면 태벌 20대를 부과한다(山谷間道路險阻草木茂盛 閭里之人各宜出力 七八月則伐草除道 九十月間治橋梁以爲定式 以便往來 而或有不謹施行者 則有司看審用罰 每名徵罰田米一斗 又不納米者 則笞罰二十度事)."[115]

3. [요건4(촌락자원의 공동이용)]의 충족여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요선계・요선동리가 이영훈이 제시하는 [요건4(촌락자원의 공동이용)]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이다.

중세 유럽의 촌락을 기준으로 삼아 근세 일본의 촌락을 판단하면 근세 일본의 촌락도 넉넉하게 촌락공동체성을 인정할 만한 것인지 의문이다. 근세 일본의 촌락이 중세 유럽의 촌락처럼 삼포식 농경 등 긴밀하게 공동이용하는 것이 아니었고, 대부분의 촌락이 산림을 공동소유・공동이용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근세 조선의 대부분의 촌락에서 산림과 천택을 공동소유・공동이용한 것은 아니지만 산림과 천택을 공동소유・공동이용한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충청도 옥천군과 괴산군이 대표적 사례였다.

일제 당국의 관습조사 위촉에 따른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복명서(復命書)도 있다. 수원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1930년 12월자 문건인데 조사사항에 대한 복명 중 촌락조직과 산림의 보호와 그 소유권 귀속에 관한 보고 등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박재화와 신필원 2명이 전주, 광주, 목포, 군산 등지에 출장하여 조사한 바를 복명한 것이다.

"㉦ [촌락조직] 예날에 오가(五家)를 1통(一統)으로 삼은 바 기호(幾戶) 기통(幾統)을

114) 요선계문적탐구(2012), 35면.
115) 요선계문적탐구(2012), 36면.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5.132.14.104 at Wednesday, September 21, 2022 5:55 PM

물론하고 합거일처(合居一處)하야 하나의 기관이 도어 행정 등 제반사무를 행하는 것을 촌락이라 일컬었다. 그러니 촌락은 동리(洞里)의 별칭이다. 이(里)에 이정(里正)이 있으니 즉 이중(里中)의 장(長)이다. 이정이 군부행정상(郡府行政上) 동리자위상(洞里自衛上) 제반사무를 담임하여 부세의 수납과 조적(糶糴)의 출납 등을 때에 맞주어 납부[無失其時]하고 도로 교량 하천 등의 수리와 이내(里內) 공유물의 정리와 관혼상장보조 등에 자임하여 그 책임에 당함. 이정의 밑에 하소임(下所任)이 있으니 하소임은 즉 이정에 속한 보조원이요, 이정의 위에 면집강이 있으니 집강은 즉 현재의 면장이다. 이정은 집강에 예속하여 그 지도하에 근무함."

"⑥ [산림보호] 사유산은 각 그 산주가 간수인을 두어 초채도작(樵採盜斫)을 금지하고 동리중 공동소유산은 동리인이 송계를 결성하여 송목보호에 임하니 계에 계장을 두고 유사 약간인이 이를 관리하되 사유산・공동산을 막론하고 춘분시에 원송목(元松木) 외에 잡초를 예획(刈劃)하여 전답에 비료로 하니 이를 일컬어 시초(時草)라 하고 추분시에 위와 같이 예취하여 연료에 수용하게 하니 이를 일컬어 절초(節草)라 한다."

요컨대 이영훈이 제시하는 [요건1(구성원 사이의 평등성)], [요건2(생득적 요소로 귀속결정)]를 필요한 요소로 보지 않으면 근세 조선에 촌락공동체가 검출되지 않는다고 선불리 판정할 일이 아니다.

Ⅷ. 결어 : 조선 촌락사 연구 수준 제고를 위한 제언

우선 촌락사 연구의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대한민국 학계에서 근세 조선 촌락생활사의 '비교사적 특질'의 검출 작업을 진지하게 수행한 이영훈 교수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이영훈이 제안한 여러 부분에 대하여 이견(異見)을 제시하였지만 학술적 담론의 수준을 높이려면 향후에도 많은 토론과 논쟁이 필요하고, 사료의 발굴과 적절한 자리매김도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결론에 갈음하여 조선촌락사 연구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언을 하겠다.

1. 촌락 구성원 자격의 부여를 위한 신입례의 존부

전근대사회에서는 특정한 단체・집단의 구성원이 되려면 모종(某種)의 통과의례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5.132.14.104 at Wednesday, September 21, 2022 5:55 PM

나 신입례, 가입금의 납입 등과 같은 진입장벽이 있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영훈은 비교사적 고찰을 강조하는 연구자이므로 무라[村]를 근세 일본의 촌락공동체로 설정하는 일본인 연구자는 이 문제에 관하여 어떤 입장에 서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자.

어느 특정 시점에서 특정 촌락 A의 촌내인(村內人)과 촌외인(村外人)의 구분이 있다고 가정하자. 조선 후기 상황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두 가지 문제를 들어보겠다. 이영훈의 논증에 의하면 조선 후기에는 도망노비가 대량으로 발생하였다.116)다른 촌락에서 도망한 노비의 가장이 가족을 동반하여 촌락 A로 이래(移來)하는 경우 그 도망노비는 이래하자마자 촌락 A의 촌민이 되는가 아니면 통과의례나 신입례와 같은 진입장벽이 있는가? 또 조선 후기에도 남귀여가(男歸女家) 혼속117)은 지속적으로 행하여졌다. 타성(他姓) 받이 신랑이 촌락 A에 들어오면 촌민으로서의 자격심사나 신입례[예를 들어 동상례(東床禮) 등] 없이 바로 촌락 A의 촌민이 되는가? 이영훈과 김필동은 촌락공동체가 되려면 이런 진입장벽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전제에 서 있다.

관습조사보고서에 "동리를 떠나면 수익(受益)의 자격을 상실하고 새로 동리 안으로 이주하면 그 자격을 얻는다."118)는 기술이 있지만 다른 증거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동상례(東床禮)의 존재119)는 다른 동리의 사람이 촌락 A에 이주하려고 하면 촌민으로서의 자격심사나 신입례가 존재함을 암시한다. 1744년에 작성된 요선계・요선동리 입약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다.

> "뿌리 없이 타관에서 온 유민이 본동에 내접하여 군보에 들었다가 도망치면 그 번전(番錢)을 인동(隣洞)에 침징(侵徵) 하려는 것이니 병폐가 이보다 더 큰 게 없고 동내에서 감당할 수 없다. 동내의 상하가 굳게 약조하여 절대 접촉하는 것을 불허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 즉시 쫓아낸다. 혹 은닉해 주는 자가 있으면 두두인(頭頭人)과 허접한 자 모두를 각별히 무겁게 다스려 나중에 있게 될 폐단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無根着他官流民來接於本洞 而入於軍保固爲逃躱 則其番錢侵徵於隣洞 而其爲弊瘼莫此爲巨 洞內不能支當 此後則洞內上下牢約絶不許接卽爲驅逐 或有隱匿者 在村頭頭人幷許接者各別重治以防後弊事)."120)

116) 이영훈(2001), 263~266면.
117) 남녀가 혼인하면 신랑이 신부가 사는 동네로 가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본가로 돌아오는 혼속이다.
118) 조선총독부 중추원, 『관습조사보고서(1912)』, 36면.
119) 박순(朴焞), "전라도(全羅道) 동계문서(洞契文書)에 나타난 동상례(東床禮)연구", 『고문서연구』 6권(1994)에 의하면 동상례는 나주(羅州)의 금안동계(金鞍洞契), 해남(海南)의 산막동계(山幕洞契), 영암(靈巖)의 망호동계(望湖洞契), 남원(南原)의 둔덕방동계, 태인(泰仁) 고현동약 등에서 발견된다.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5.132.14.104 at Wednesday, September 21, 2022 5:55 PM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5.132.14.104 at Wednesday, September 21, 2022 5:55 PM

신원(身元)이 확실하지 않은 외래인을 함부로 허접(許接)하면 안되고 이 약조를 위반하면 은익자는 물론이고 두두인까지 무거운 징계를 내리겠다는 약조이다. 앞에서 소개한 아다치 게이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근세 일본의 무라와 명청 시대의 중국의 촌락에서 촌외인(村外人)이 촌내인(村內人)이 될 수 있는 조건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일본의 무라는 특정한 이에(家)로 구성된다. 이에(家)는 가명(家名)・가업(家業)・가산(家産)을 계승하는 안정성이 높은 단체였다. 이에의 안정성은 이에의 입장에서도 수호의 필요가 있었지만 무라의 입장에서도 무라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의 일관성이 요구되었다. 일본의 무라는 구성원이 대대로 특정된 폐쇄적・배타적 집단이었다. 무라 사회란 지금도 여전히 배타적 집단의 대명사이다. … 이에 반하여 중국의 촌락은 일반적으로 개방적이다. … 화북 농촌의 몇 가지 사례에 의하면 (촌외자였던 가족이 : 필자 추가) 가족을 동반하여 거주할 의사로 (촌락 A의 경내로 들어오면 : 필자 추가) 촌민으로 간주된다. 촌민이 되는 진입장벽이 없다. 공동업무도 독자의 기구도 존재하지 않는 촌락에는 촌내인과 촌외인을 구별하는 명확한 지표(指標)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촌민의 자격조건' 이라는 질문에 적절한 답변이 나오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 내주(來住)가 용이한 것과 촌민이 되어도 특별한 권리가 없는 것은 표리일체이다. 촌내인이 촌외인과 비교하여 향수(享受)할 수 있는 촌내인의 특별한 우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121]

특정 동리의 주민이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그 동리의 촌민이 되거나 그 동리를 지역적 기반으로 결계(結契)된 동계의 계원이 되어야 한다면 그 상황은 일본인들이 1940년대에 조사한 화북(華北) 농촌의 촌락 상황과 유사한 것이다. 아다치 게이지는 그 정황을 오히려 '촌락공동체 부재론'의 논거로 사용하고 있다. 아다치 게이지가 촌락공동체 부재론의 논거(1940년대의 중국 화북지방의 농촌)로 사용하는 정황을 이영훈과 김필동은 촌락공동체 검출의 요건으로 설정한 셈이다.

유럽 중세의 촌락에서 발견되는 공동체를, '토지를 공동소유・공동이용하는 공동체론'의 견지에서 자리매김하면 이른바 봉건적(게르만적) 공동체이다. 오오츠카 히사오에 의하면 봉건적 공동체는 "인위적인 형성의 결과(막스 베버)"이고 "역사적 소산인 제2차적 구성(칼 맑스)"[122]이다. 막스 베버가 이념형의 하나로 설정하는 '게르만적 공

120)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요선계, 邀僊稧文籍探究(2012), 37면; 오영교, "조선후기 동계의 구조와 운영", 『조선시대사학보』 24(2003)[이하 이 논문은 '오영교(2003)'으로 인용함] 참조.
121) 足立(1998), 59~60면.

동체 = 촌락공동체'에서는 외래자를 촌민(村民 = 공동체성원)으로 승인할 때 이웃(vicini)들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한다.[123)]

게르만 관습법의 전형으로 불리우는 살리카 법전 XLVII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1. 다른 사람들의 마을에 이주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중의 일부가 그를 수용하고자 하더라도 마을 사람들 중 한 사람이라도 나서서 그에 반대하면 이주의 허가를 받지 못한다.

§ 2. 한두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에 정주(定住)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대자들은 증인들을 대동한 자리에서 그 이주희망자에게 열흘 주야 이내로 그 곳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하며, 그 열흘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차 증인들과 함께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또 다른 열흘 주야 이내로 떠나 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또다시 세번째로 열흘 주야 이내로 퇴거해 줄 것을 통지한다. 이 서른 주야가 채워졌는데도 여전히 퇴거에 불응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대자는 그 다음 절차로서 그를 법정에 소환하고, 또한 그에게 위 요청을 할 때에 함께 동행했던 자신의 증인들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다. 소환을 받은 자가 출석에 불응함에 있어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대지 못하며 또한 그 소환이 위에서 말한 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그를 소환한 자는 자신의 위험부담으로 왕의 관원에게 현장으로 가서 그를 추방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 때에 피추방자는 그 곳에 경작해 온 것이 있다 할지라도 법절차를 따르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며, 이에 더하여 1,200 데나리우스, 즉 30 솔리두스의 책임을 진다.

§ 3. 이주의 약정이 맺어지기도 전에 타인을 다른 사람들의 마을에 이주하도록 초청한 자는 그 가액 및 손해와는 별도로 1,800 데나리우스, 즉 45 솔리두스의 책임을 진다.

§ 4. 마을에 이주해 온 자가 있는데 그에게 열두 달 이내에 법에 따른 이의(異議)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마을의 다른 사람들처럼 그 곳에 정주한다."[124)]

아다치 게이지는 "일본의 무라는 구성원이 대대로 특정된 폐쇄적・배타적 집단이었다. 무라 사회란 지금도 여전히 배타적 집단의 대명사"라고 언급하였는데 근세 조선의 마을에도 배타적 측면이 없지 않았다.[125)]

---

122) 大塚(1978), 86면.

123) 大塚(1978), 88면.

124) *The Laws of the Salian Franks*-Translated and with an Introduction by Katherine Fischer Drew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1), pp.191~192.

125) "우리나라 속(俗)에 정초가 되면 두 마을이 편을 나누어 돌을 던져 승부를 다투는데 이를 편투라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5.132.14.104 at Wednesday, September 21, 2022 5:55 PM

요컨대 이영훈과 김필동이 제시하는 [요건2(생득적 귀속 : 가입과 탈퇴의 선택불가능성)]는 촌락공동체성을 인정할 때 지표로 설정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지표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2. ‘토지의 공동소유 · 공동이용’을 공동체 존재의 필수요건으로 삼을 것인가?

근세 조선의 촌락에서 산림과 천택을 공동소유・공동이용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산림과 천택을 공동소유・공동이용한 사례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토지의 공동소유・공동이용’을 촌락공동체 존재의 필수요건으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와타나베 다카시는 촌락공동체의 3조건으로 “① 생산력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저급한 단계에서 사람들이 물질적 생산활동을 할 때 불가피적으로 결합하는 사회관계일 것, ② 그 집단 성원의 사회적 생활과정에서 다양한 요구의 많은 부분이 기본적으로 그 집단 내부에서 충족되는 것 같은 사회일 것, ③ 사람들이 자유의지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주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 사회집단일 것”[126]을 들고 있다. 그가 제시한 ①은 칼 맑스와 막스 베버의 공동체 이론과 친화성이 있는 요건이고, ②는 이영훈이 제시한 [요건5(공동업무의 통합성・광범성)], ③은 이영훈이 제시한 [요건2(가입・탈퇴의 선택불가능성)]와 친화성이 있는 요건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와타나베 다카시의 ③의 요건 제시에 배치되는 견해[127]도 제시되고 있다.

와타나베 다카시가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①이다. 이에 상응하는 이영훈의 [요건4]는 “공동의 재산이 소유된 위에 추구되는 공동의 경제적 이해가 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 재생산에서 긴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제시되었지만 막상 이영훈의 논문에서는 이 부분에 관한 상세한 논증이 전혀 없다.

한다. 비록 사람이 죽더라도 뉘우치지 않고 관청에 신고하지도 아니한다. 서울의 약점산과 영남의 안동부에서 이 속이 더욱 성행한다. 이것이 진짜 희살이다[吾東之俗 每正月之初 兩里分偏 擲石以角勝 名之曰偏鬪 雖死不悔 亦不申告 京城之藥岾山 嶺南之安東府 此俗尤盛 此眞是戲殺 又凡角抵戲(較脚力) 拖鉤戲(挽索以被曳者 爲不勝) 踏索戲(空中踏索而行) 因而殺人者 近於戲殺 餘不可誤稱也]”국역은 박석무・정해렴, 『역주흠흠신서』(현대실학사, 1999) 2권 276면의 국역을 참고하였다.

126) 渡辺尚志, 『近世の豪農と村落共同体』(東京大学出版会, 1994), 序章

127) 후카야 가쓰미(深谷克己) 지음(塙選書, 1993), 배항섭・박화진 옮김, 『백성성립(百姓成立) : 일본 근세 농민의 위상과 농가 경영』(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7), 105면은 “이미 근세 시대엔 촌락공동체를 자연발생적인 운명공동체로 볼 수는 없다. 그 이상의 정치적 성격을 띤 ‘기관’이자 촌락과 가족 주민을 매개로 하는 대표자 회의체였던 것이다.”라고 적었다.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5.132.14.104 at Wednesday, September 21, 2022 5:55 PM

크리스토퍼 다이어는 영국 중세 촌락공동체(medieval village community)를 “특정한 영역 안에 사는 사람들의 결합(association)으로서, 자원(주로 경지나 목초지)의 이용을 통제할 정도로 충분히 조직되고, 국가 등의 상위의 권위와 교섭하는 주체”[128)]로 자리매김하였다. 물론 이것은 중세 영국의 촌락공동체에 대한 자리매김이지 지구적 규모에서 검출되는 촌락공동체의 정의나 요건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필자는 ‘토지의 공동소유・공동이용’을 공동체 존재의 충분조건으로 볼 수는 있지만 필수조건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산림과 천택을 공동소유・공동이용한 사례가 적다고 촌락공동체의 카테고리에서 배제하는 것은 지나친 자민족중심주의적 사고방식(ethnocentrism)이 될 것이다.

영국 중세의 촌락에 관하여 고전으로 통하는 저술의 저자 조오지 캐스퍼 호만스는 그의 저술 21장 ‘촌락과 바깥세상’에서 ‘촌락의 중세적 법인격’에 대하여만 언급하였고,[129)] 그가 강조하는 평등은 신분적 평등이 아니라 경제적 기회의 평등이었다.

3. 행정동리와 자연동리, 공동납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증의 필요성

이영훈의 분석대상은 4개의 자연동리[백학(白鶴), 텃골(基洞), 대저하리(大渚下里), 대저상리(大渚上里)]를 아우르는 ‘대저리’라는 행정동리였다. 필자가 샘플로 선택하여 분석한 요선동리는 중방동・도곡동・두릉동・하동・도내 등 5개 자연동리가 묶인 행정동리였다. 행정동리는 어떤 원칙으로 설정되는가? 이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아직 연구가 충분히 수행되지 못하였다.

공동납 분야에서 연구가 깊은 송양섭은 2021년에 “수취단위로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다.”[130)]고 파악하였다. 19세기 초반까지는 대체로 위와 같이 부세징수의 편의성 차원에서 몇 개의 자연동리가 묶여 행정동리로 편제되었다. 2008년에 이용기는 19세기 중반부터는 “동계가 결성되는 범위가 농민의 기초생활단위인 자연동리 범위로 소규모화된다.”[131)]고 보고하였다. 다른 지역에서도 송양섭과 이용기의 보고와 비슷한 양상으로 검출되는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128) Christopher Dyer(1994), p.408.; Dieter Eikemeier, *Documents from Changjwa-ri : a further approach to the analysis of Korean villages* (Wiesbaden : Otto Harrassowitz, 1980). p.10도 대동소이하다.

129) George Caspar Homans, *English Villagers of the Thirteenth Century* (WW Norton & Co. January 1, 1975), pp.328~338.

130) 송양섭, “19세기 巨濟 舊助羅里의 부세운영과 촌락사회의 동향”, 『大東文化硏究』 제114집 (2021)[이하 이 논문은 ‘송양섭(2021)’로 인용함], 382면.

131) 이용기(2008), 262면.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5.132.14.104 at Wednesday, September 21, 2022 5:55 PM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5.132.14.104 at Wednesday, September 21, 2022 5:55 PM

송양섭은 공동납의 양상에 관하여 3가지의 흥미 있는 발견을 하였다. 첫째, “(특정한) 세역(稅役)의 공동부담으로 묶여진 촌락군(村落群)은 내부의 의견을 조율하고, 외부적 요인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느슨한 협의체적 유대를 맺고 있었”으며, “세역 운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촌락 사이에 치우침 없는, 공정하고도 균평한 부담”이었고, 촌락 사이에 “이해의 충돌이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官)이 나서 중재역”을 담당하였으며, “마을 내의 주요사안들은 동임(洞任)들에 의해 수시로 관에 보고되었고 각종 합의 문서(완문 혹은 완의 : 필자 첨가)는 관의 인증을 통해 공신력을 얻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둘째, “부세를 매개로 넓어진 관(官)과의 접촉면은 계방(契房)과 같이 이서집단과의 사적인 결사가 맺어지는 토양이 되기도 했다.”[132] 셋째, “분동(分洞)과 합동(合洞)의 중요 요인은 각종 부세 부담과 관련되어 일정한 수취단위로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133]였으며, 촌락들은 “각종 부세・잡역을 항목별・물종별로 공동부담”[134]하였다. 근세 조선의 촌락의 공동납의 구체적 모습은 여전히 규명되어야 할 영역이 많이 남아 있다.

4. 근세 조선의 촌락과 근세 일본의 촌락의 본격적인 비교의 필요성

이영훈은 자신의 논문의 서두에서 자신의 연구초점이 근세 조선 촌락생활사의 ‘비교사적 특질’의 검출에 있음을 명시하였지만 여러 가지 징후로 비추어 볼 때 그가 주로 참조한 비교대상은 근세 일본의 촌락공동체로 보인다. 그러나 그런 문제의식에서의 선구적인 업적은 1998년에 발표된 김현영의 논문[135]이다. 김현영은 조선 후기와 일본 근세를 비교할 때 “일본 근세의 신분 계층 구성의 특징은 백성(百姓), 정인(町人) 등의 평민(平民)이 점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지만 “전 인구의 반 이상을 점하고 있는 백성을 동일 계층으로 파악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 ‘백성 내부의 계층구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136]고 지적하였다. 반면에 조선 후기의 지배신분으로 간주되고 있는 양반층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19세기 초에는 전인구의 70.3%가 되어 19세기가 되면 양반의 지배신분으로서의 의미는 이미 사라지게

---

132) 송양섭(2021), 424~425면.
133) 송양섭(2021), 423~424면.
134) 송양섭(2021), 381면.
135) 김현영, “고문서를 통해 본 일본의 근세촌락 (近世村落) - 비교사적 관점에서 - ”, 『고문서연구』 12권, 1998[이하 이 논문은 김현영(1988)로 인용함].
136) 김현영(1988), 173~174면.

되었다.[137] 2010년에 김현영은 "한국의 전근대 촌락의 개방성이나 불평등성에 비교하면, 일본의 전근대 촌락은 매우 폐쇄적이지만 백성 간의 평등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하에"조선시대 중후기 경주 양좌동의 촌락공동체 관련 문서들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의 촌락 조직과 그 성격에 대하여 비교사적 시각에서 검토"한 논문[138]을 발표하였다.

요컨대 근세 조선의 촌락과 근세 일본의 촌락의 비교는 김현영이 첫발을 내 디딘데 불과하다. 다른 한편 이영훈의 근세조선 촌락공동체부재론은 이론과 실증 모두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성급한 판단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영훈과 김현영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근세 조선의 촌락과 근세 일본의 촌락의 비교 수준을 고도화하고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는 것이 적합한가 하는 문제조차 본격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근세 일본의 무라와 비교적격이 있는 근세 조선의 동리는 행정동리인 대저리인가 아니면 대저리를 구성하는 자연동리인가? 이영훈과 김현영의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조차도 거론되지 않았다.

필자는 근세 조선에서는 입약(立約)・약조(約條)・완의(完議)를 생산해 낸 동계・동리, 근세 일본에서는 무라오키데[村掟]를 생산해 낸 무라야말로 비교적격이 있는 실체들이라고 생각한다. 이영훈이 언급한 '단체적 규범'[139]이란 유럽 중세의 촌락에서는 촌락이 제정한 촌락규범(village code 혹은 village by-law)[140], 근세 일본에서는 무라오키데인데 이것들에 상당하는 근세조선의 실체는 '입약(立約)・약조(約條)・입의(立議)・완의(完議)' 등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김현영이 2010년의 논문에서 경상도 경주 양좌동 마을의 '完議'에 주목[141]한 것은 시의적절한 시각으로 보인다.

〈게재논문심사정보〉
• 논문투고 : 2021년 09월 13일 • 심사완료 : 2021년 09월 27일 • 게재확정 : 2021년 09월 27일

137) 김현영(1988), 171면.
138) 김현영, "조선 중후기 경주 양좌동의 촌락 조직과 그 성격", 『영남학』 17권, 2010[이하 이 논문은 '김현영(2010)'으로 인용함].
139) 이영훈(2001), 296-297면
140) Warren O. Ault, "Village By-Laws by Common Consent", Speculum, Apr., 1954, Vol. 29, No. 2, Part 2: *Mediaeval Representation in Theory and Practice* (Apr., 1954), pp.378~394
141) 김현영(2010), 388-398면.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5.132.14.104 at Wednesday, September 21, 2022 5:55 PM

▪ 참고문헌 ▪

단행본

강성복, 『용화리의 역사와 민속』(금산문화원, 1992)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요선계, 『邀僊稧文籍探究』(2012)

김현영, 『고문서를 통해본 조선시대 사회사』(신서원, 2003)

『고문서집성』 3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靈巖郡, 『鳩林大洞契舍復元推進委員會 鳩林大洞契誌(2004)』

신안군 향토문화진흥원, 『지도군수 오횡묵 정무일기(1895.2-1897.5)』(1992)

심희기, 『한국법사연구 : 토지소유와 공동체』(영남대학교출판부, 1992)

이해준, 『조선시기 촌락사회사』 (민족문화사, 1996)

정극인(丁克仁) 저; 안태석, 안진회 번역, 『(국역) 古縣鄕約』(정읍문화원, 2011)

정약용(1762~1836), 『아언각비(雅言覺非)』

박석무・정해렴, 『역주흠흠신서』(현대실학사, 1999)

『한국지방사자료총서 : 보첩편3』(여강출판사, 1987)

논문

김경일, “조선말에서 일제하의 농촌사회의 동계(洞契)에 관한 연구”, 『한국학보』 10권 2호(1984)

김선경, “조선후기 조세수취와 면리 운영”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김인걸, “조선후기 향촌사회통제책의 위기”, 『진단학보』 제58호(1984)

김필동, “맛질의 농민들 서평”, 『경제사학』 31권 (2001)

______, “한국 전통 사회의 공동체와 개인”, 『사회와 이론』 창간호(통권 제1집)(2002)

김혁, “18~19세기 鄕約의 실천과 사회관계의 변화”, 『한국문화』 66(2014)

김현영, “고문서를 통해 본 일본의 근세촌락(近世村落) - 비교사적 관점에서 - ”, 『고문서연구』 12권, 1998

______, “조선 중후기 경주 양좌동의 촌락 조직과 그 성격”, 『영남학』 17권(2010)

김홍주, “조선 향촌규약에 나타난 마을공동체 운영 특성 : 고현향약을 중심으로”, 『국토연구』(2013.12)

노주은・박병현・유영미,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분석 : 부산지역 14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24권 제4호(2021)

박현순, “조선시기 鄕罰의 내용과 추이”, 『국사관논총』 103집(2008)

______, “17~18세기 향약의 班常間 부조에 대한 고찰”, 『朝鮮時代史學報』 82(2017)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5.132.14.104 at Wednesday, September 21, 2022 5:55 PM

손병규, "조선후기 비총제(比摠制) 재정의 비교사적 검토",『역사와 현실』81(2011)

송양섭, "1896년 智島郡 創設과 西南海 島嶼 支配構造의 再編 -吳宖默의『智島郡叢瑣錄』을 중심으로 - ",『한국사학보』26, 2007

______, "19세기 거제도 구조라 촌락민의 직역변동과 가계계승 양상 -『항리호적중초』를 중심으로",『한국문화』67 (2014)

______, "18~19세기 동래부 동하면의 '면중'과 잡역운영",『역사와 현실』112, 한국역사연구회 (2019)

______, "19세기 巨濟 舊助羅里의 부세운영과 촌락사회의 동향",『大東文化硏究』제114집 (2021)

______, "19세기~20세기 초 巨濟 舊助羅里의 洞中과 洞錢의 운영",『한국문화』94(2021)

심재우, "조선 시대 훼가출향(毁家黜鄕)의 성격과 전개 양상"『한국학(구정신문화연구)』, 43(4) (2020)

심희기, "계유재산의 소유이용관계와 총유-동계(촌락공동체)를 중심으로 - ",『법과 사회』, 4권 (1991)

오영교, 조선후기 동계의 구조와 운영,『조선시대사학보』24(2003)

안승택, "한 현대농촌일기에 나타난 촌락사회의 계(契) 형성과 공동체 원리",『농촌사회』제24집 제1호(2014)

이영훈, "18・19세기 대저리의 신분 구성과 자치 질서", 안병직・이영훈 편,『맛질의 농민들-한국근세촌락생활사-』(일조각, 2001)

이용기, "19세기 후반 班村 洞契의 기능과 성격 변화 - 전남 장흥군 어서리 동계를 중심으로 - ",『사학연구』91 (2008)

______, "19세기 동계의 마을자치조직으로 전환에 관한 시론",『사학연구』128호 (2017)

전민영, "18세기 말~19세기 해촌(海村)의 공동납(共同納) 운영 방식 - 거제(巨濟) 구조라리(舊助羅里) 고문서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48권 (2016)

______, "19세기 巨濟 舊助羅里 마을고문서와 공동생활 방식 - 旅客主人・漁條를 둘러싼 문제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제51호(2017)

정순우・안승준, "거제도 구조라리 고문서와 그 성격",『고문서집성』3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정진영, "사족과 농민-대립과 갈등, 그리고 상호의존적 호혜관계",『조선시대사학보』73, 2015

______, 18세기 일기자료를 통해 본 사노비의 존재형태 - 백불암 최흥원의 ≪曆中日記≫ (1735~1786)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53, 2018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5.132.14.104 at Wednesday, September 21, 2022 5:55 PM

외국문헌

[단행본]

Dieter Eikemeier, Documents from Changjwa-ri : a further approach to the analysis of Korean villages (Wiesbaden : Otto Harrassowitz, 1980)

Herman Ooms, Tokugawa Village Practice: Class, Status, Power, Law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George Caspar Homans, English Villagers of the Thirteenth Century (WW Norton & Co. January 1, 1975)

M. M. Postan, The medieval economy and society: An Economic History of Britain, 1100-1500.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The Laws of the Salian Franks-Translated and with an Introduction by Katherine Fischer Drew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1)

논문

Warren O. Ault, "Village By-Laws by Common Consent", Speculum, Apr., 1954, Vol. 29, No. 2, Part 2: Mediaeval Representation in Theory and Practice (Apr., 1954)

W. O. Ault, "The Vill in Medieval England," in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26 (1982)

Harumi Befu, "Village Autonomy and Articulation with the State: The Case of Tokugawa Japan" in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Nov., 1965, Vol. 25, No. 1 (Nov., 1965)

C. Dyer, "Power and Conflict in the Medieval English Village," in Medieval Villages: A Review of Current Work, ed. D. Hooke (Oxford, 1985)

Christopher Dyer. "The English Medieval Village Community and Its Decline", in Journal of British Studies, Oct., 1994, Vol. 33, No. 4, Vill, Guild, and Gentry: Forces of Community in Later Medieval England (Oct., 1994)

Christopher Dyer, "Chapter 1. Power and Conflict in the Medieval English Village" in Everyday Life in Medieval England (Bloomsbury Academic, 2000)

Dieter Eikemeier, Documents from Changjwa-ri : a further approach to the analysis of Korean villages (Wiesbaden : Otto Harrassowitz, 1980)

George Caspar Homans, English Villagers of the Thirteenth Century (WW Norton & Co. January 1, 1975)

M. M. Postan, The medieval economy and society: An Economic History of Britain, 1100－1500.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5.132.14.104 at Wednesday, September 21, 2022 5:55 PM

Frederic Seebohm, The English Village Community (LONGMANS, GREEN, & CO., 1905.)
Zvi Razi, “FAMILY, LAND AND THE VILLAGE COMMUNITY IN LATER MEDIEVAL ENGLAND”, in Past & Present, Volume 93, Issue 1, November 1981

후카야 가쓰미(深谷克己) 지음(塙選書, 1993), 배항섭・박화진 옮김, 『백성성립(百姓成立) : 일본 근세 농민의 위상과 농가 경영』(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7)
旗田巍, 『中國村落と共同體理論』(岩波書店, 1973)
조선총독부 중추원, 『관습조사보고서(1912)』
朝鮮總督府 中樞院, 『民事慣習回答彙集(1933)』
大塚久雄, 『共同體の基礎理論(29刷)』 (1978, 岩波書店)
足立啓二, 『專制國家史論 : 中國史から世界史へ』(柏書房, 1998)
福本勝清, “戦後共同体論争に関する一覚書”, 『明治大学教養論集』 통권 349호 (2001,9)
渡辺尚志, 『近世の豪農と村落共同体』(東京大学出版会, 1994)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5.132.14.104 at Wednesday, September 21, 2022 5:55 PM

〈Abstract〉

A critical review on the thesis of the nonexistence of medieval English type village community in later part of Choson period by an economic historian Younghoon Rhee

Sim Hui Gi*

Ⅰ. Raising the issue

In 2001, Younghoon Rhee, a prominent Korean economic historian, argued that medieval English type village communities did not exist in the later part of Choson period. If this argument is close to historical fact, it will greatly lower the morale of the village community activists that are currently in progress. This paper aims to present research tasks to deal with reasonably the argument of Younghoon Lee.

Ⅱ. Five elements of symptom of the existence of village community, which Younghoon Rhee suggested.

First element: There must not be a slave owner and slave relation between members.

Second element: Joining and withdrawing, as a member cannot be selective freely.

Third element: The village community must have a legal personality separate from individual members.

Fourth element: The village community must jointly own or use the land.

Fifth element: The common business covered by the village community should be wide enough.

Ⅲ. My opinion on the Rhee's suggestion

First, Rhee's first and second elements should be discarded because of the unreasonableness of his arguments.

* honorary professor, Law School, Yonsei University.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5.132.14.104 at Wednesday, September 21, 2022 5:55 PM

Second, villages in later part of the Choson period had independent legal personalities.

Third, many villages in later part of the Choson period had covered considerably wide range of common business.

Fourth, many villages in later part of the Choson period did not own mountain area commonly or use of it. However, I think that Rhee's fourth element can be a kind of an important factor but should not be a necessary one. Rhee's position is a kind of an expression of western ethnocentrism.

Ⅳ. Conclusion and some suggestions.

It seems Rhee's argument that medieval English type village community did not exist in later part of the Choson period was hasty judgment, both in theory and in empirical evidence.

However, it is necessary to advance and deepen the level of research on the villages in later part of the Choson period.

〈Key Words〉

village community, village commune, legal personality, self governance, village bylaw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5.132.14.104 at Wednesday, September 21, 2022 5:55 PM